nabo Cost Estimates & Tax Issues

추계&세제 이슈

2019년 Vol. 1 통권 제6호

CONTENTS

2018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추계세제 주요 정책현안 분석
국내외 추계세제 동향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nabo Cost Estimates & Tax Issues
추계&세제 이슈

2019년 Vol. 1 통권 제6호

Contents

2018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3

추계세제 주요 정책현안 분석 11

2019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의무지출 12

사회보험 재정전망 시리즈 18
–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

2019년도 시행 개정세법 주요 내용 28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35

국내외 추계세제 동향 43

2018년 국세수입 실적 및 동향 44

글로벌 납세환경 변화와 시사점 48
– 「Paying Taxes 2019」(World Bank)를 중심으로 –

캐나다 국민연금 재정개혁 사례 53

대체복무제도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비용추계 57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59

2018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018년 4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 2018년 4분기 국회는 5회의 본회의(정기회 중 4회 및 임시회 중 1회)를 통해 총 442건의 법률을 가결

◆ 가결 법률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 124건(전체의 28.1%)
- 의원발의 35건, 위원장제안 80건, 정부제출 9건

◆ 수입법률 32건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5조 3,904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 국가 부담 연평균 7조 6,468억원 수입 감소 예상, 지방자치단체 부담 연평균 2조 2,563억원 수입 증가 예상

◆ 지출법률 96건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3조 5,314억원의 추가 소요 예상
- 국가 부담 연평균 3조 1,067억원 추가 소요 예상, 지방자치단체 부담 연평균 4,246억원 추가 소요 예상

◆ 법령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출의무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은 연평균 1조 7,100억원 추가 소요 예상

1. 2018년 4분기 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4분기 가결 법률 442건 중 재정수반법률은 124건

2018년 4분기 국회는 442건의 법률을 가결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률은 전체의 28.1%인 124건

- 재정수반법률안 124건 중 수입의 증감을 초래하는 법률은 32건, 지출의 증감을 초래하는 법률은 96건(수입과 지출을 동시에 초래하는 법률 4건 포함)

2018년 4분기 가결 재정수반법률 현황

(단위: 건)

	가결 법률	재정수반법률		
		소계	수입법률	지출법률
2018년 4분기	442	124[1]	32	96

주: 1) 재정수반법률 124건에는 수입 및 지출의 증감이 동시에 발생하는 법률 4건이 함께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수입부문

문지은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45)

2018년 4분기에 가결된 수입 법률 시행 시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5조 3,904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2018년 4분기 가결 수입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수입 합계	수입유형별		재정주체별	
	조세수입[1]	기타수입[2]	국가	지방자치단체
−53,904 (100%)	−46,324 (85.9%)	−7,581 (14.1%)	−76,468 (77.2%)	22,563 (22.8%)

주: 1) 조세수입에는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이 포함
2) 기타수입에는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포함
1. 소요액이 미미하거나 추계가 곤란한 경우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재정소요점검 결과의 수치는 2019년부터 2023년 5년 동안 연평균 금액
4. ( )안은 수입 합계 중 각각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결 수입법률: 연평균 5조 3,904억원 수입 감소 예상

- (수입유형별) 전체 수입변동 중 조세수입은 85.9%로 연평균 4조 6,324억원 감소 예상, 기타수입은 14.1%로 연평균 7,581억원 감소 예상
  - 조세수입 중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로장려금(EITC)이 확대됨에 따라 연평균 3조 4,729억원의 소득세 감소 예상

조세수입은 연평균 −4조 6,324억원, 기타수입은 연평균 -7,581억원

- (재정주체별) 국가 부담은 77.2%인 연평균 7조 6,468억원의 수입 감소 예상,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22.8%인 2조 2,563억원 수입 증가 예상

국가 부담은 연평균 -7조 6,468억원, 지자체 부담은 연평균 +2조 2,563억원

- (위원회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률이 연평균 7조 991억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가장 많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연평균 2조 2,563억원 수입 증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연평균 5,179억원 수입 감소) 순으로 나타남
  -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근로장려금 확대 및 지급액 인상(「소득세법」 등 개정관련, 연평균 3조 4,729억원) 등
  -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5%로 인상(「지방세법」 개정관련, 연평균 3조 5,633억원) 등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 변경(「농지법」 개정관련, 연평균 5,163억원) 등

기획재정위원회: 연평균 7조 991억원 수입 감소 예상
행정안전위원회: 연평균 2조 2,563억원 수입 증가 예상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연평균 5,179억원 수입 감소 예상

2018년 4분기 위원회별 가결 재정수반법률(수입)의 추가재정소요 현황

(단위: 건, 억원)

위원회	가결법률	재정수반법률(수입)			
		소계 (A+B)	추계 (A)	추가재정소요 (연평균)	추계곤란 등 (B)
기획재정위원회	23	17	16	−70,991	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	2	2	−5,179	0

(계속)

(계속)

위원회	가결법률	재정수반법률(수입)			
		소계 (A+B)	추계 (A)	추가재정소요 (연평균)	추계곤란 등 (B)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6	6	5	-721	1
행정안전위원회	3	3	3	22,563	0
환경노동위원회	1	1	1	424	0
국토교통위원회	2	2	0	-	2
정무위원회	1	1	0	-	1
수입 소계	38	32	27	-53,904	5

주: 1. 소요액이 미미하거나 추계가 곤란한 경우는 추계대상에서 제외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수입 및 지출의 증감을 동시에 초래하는 법률 4건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출부문

2018년 4분기에 가결된 지출법률 시행 시 2019년부터 5년간 연평균 3조 5,314억원의 지출 증가 예상

가결 지출법률: 연평균 3조 5,314억원 지출 증가 예상

2018년 4분기 가결 지출법률 재정소요점검 결과

(단위: 억원)

지출 합계	지출유형별		재정주체별	
	의무지출	재량지출	국가	지방자치단체
35,314 (100%)	17,100 (48.4%)	18,214 (51.6%)	31,067 (88%)	4,246 (12%)

주: 1. 소요액이 미미하거나 추계가 곤란한 경우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재정소요점검 수치는 개정된 법률에 기초한 추가재정소요로 2019년도 예산상 수치와 다를 수 있음
3. 의무지출은 '법률에 의해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을 의미함
4.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재정소요점검 결과의 수치는 2019년부터 2023년 5년 동안 연평균 금액
6. ( )안은 지출 합계 중 각각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의무지출은 연평균 1조 7,100억원 추가 소요 예상

- (지출유형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일정액을 지출하여야 하는 의무지출은 연평균 1조 7,100억원 추가 소요 예상(전체 추가재정소요의 48.4%)
  - 의무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2018.12.27.)에 따라 연평균 6,659억원 추가 소요 예상

- (재정주체별) 국가 부담은 연평균 3조 1,067억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은 연평균 4,246억원 추가 소요 예상
  - 국가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은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65세 이상 소득하위 20%인 자에게 기초연금을 5만원 인상하여 30만원 지급할 때 연평균 국비 5,127억원 추가 소요 예상
  - 지방자치단체 부담 중 가장 큰 비중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연평균 지방비 1,628억원 추가 소요 예상

국가 부담은 연평균 3조 1,067억원, 지자체 부담은 연평균 4,246억원

- (위원회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재정수반법률이 연평균 1조 6,049억원으로 가장 많고,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연평균 1조 4,944억원), 정무위원회 소관(연평균 2,034억원) 순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액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기초연금법」 개정, 연평균 6,659억원) 등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의 일몰연장에 따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현행사업 유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연평균 1조 3,046억원) 등
  - 정무위원회 소관: 농림수산업자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증가(「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 연평균 1,856억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연평균 1조 6,049억원 추가 소요 예상

환경노동위원회: 연평균 1조 4,944억원 추가 소요 예상

정무위원회: 연평균 2,034억원 추가 소요 예상

2018년 4분기 위원회별 가결 재정수반법률(지출)의 추가재정소요 현황

(단위: 건, 억원)

위원회	가결법률	재정수반법률(지출)			
		소계 (A+B)	추계 (A)	추가재정소요 (연평균)	추계곤란 등 (B)
법제사법위원회	13	0	0	0	0
정무위원회	33	5	4	2,034	1
교육위원회	25	10	1	573	9
과학기술정보통신방통위원회	16	0	0	0	0
외교통일위원회	10	4	1	26	3
국방위원회	8	1	1	18	0
행정안전위원회	7	1	1	417	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8	5	2	5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4	23	14	1,026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41	6	6	51	0
보건복지위원회	87	22	17	16,049	5
환경노동위원회	15	7	5	14,944	2
국토교통위원회	31	7	5	69	2
여성가족위원회	10	5	5	101	0
지출 소계	408	96	62	35,314	34

주: 1. 소요액이 미미하거나 추계가 곤란한 경우는 추계대상에서 제외
2.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2018년 4분기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 사례

1) 수입부문

근로장려금 확대에 따라 연평균 3조 4,729억원 소득세수입 감소 예상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1] (2018.12.8. 의결)

- 근로장려금 확대개편(신청 연령조건 폐지, 가구유형별, 소득·재산 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등)에 따라, 연평균 3조 4,729억원 소득세수입 감소 예상(2019.1.1. 시행)
  - 근로장려금 확대의 개정효과는 2019년 제도 조건이 2023년까지 유지되며, 명목소득 증가 등으로 매년 대상가구수가 4.0%씩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

근로장려금 확대 등 소득세 부문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소득세(EITC 확대 등)	-60,765	-32,993	-30,456	-25,751	-23,679	-173,644	-34,729

주: 1: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 부문) 개정에 따른 소득세 세수효과 추계액을 함께 합산한 것
2.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종부세율 인상 등에 따라 연평균 1조 7,990억원 국세수입 증가 예상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2018.12.8. 의결)

- 종합부동산세율 인상(2주택, 3주택 이상 및 조정지역내 2주택 등 세율인상), 세부담 상한을 상향(150% → 조정지역내 2주택 200%, 3주택 이상 300%)함에 따라 국세수입이 연평균 1조 7,990억원 증가 예상(2019.1.1. 시행)
  - 2016년 항목별·보유주택수별·지역별·과표규모별 등 종합부동산세 실적에 대해 세법개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산출

종합부동산세 개정(종부세율 인상 등)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 인상 등)	11,597	15,314	18,353	21,703	22,983	89,950	17,990

주: 1.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액이며, 부가세(surtax)인 농어촌특별세(종부세액의 20%) 반영
2.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소득세 관련 개정사항은 소득세법(2018.12.8. 의결)과 조세특례제한법(2018.12.8. 의결)의 소득세 관련 개정 항목의 세수효과를 합한 것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2018.12.8. 의결)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연평균 3조 5,633억원 지방세수입 증가 예상

- 부가가치세액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인상하여 연평균 3조 5,633억원 지방세수입 증가 예상(2019.1.1. 시행)
  -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소비세로 추가로 전환되는 비율(4%p)만큼 지방세수입이 증가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효과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지방소비세율 인상	32,750	34,181	35,630	37,058	38,545	178,164	35,633

주: 1.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액이며, 중앙정부 재정에는 동일한 금액의 세수감소 효과 발생
2.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출부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2018.12.27. 의결)

소득하위 20% 이하 65세 이상인 자의 기초연금액 상향에 따라 연평균 6,658억원 추가 소요 예상

- 소득기준 하위 20% 이하 65세 이상인 자의 2019년 기준연금액을 인상하여 연평균 6,658억원(국비 5,127억원, 지방비 1,531억원) 추가 소요 예상(2019.2.14. 시행)
  - 소득인정액 하위 20% 이하 65세 이상인 자에게 최대 25만원 지급되던 기초연금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추가분만 계산

소득 하위 20% 이하 65세 이상인 자의 기초연금액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65세 이상 기초연금액 인상		5,760	6,196	6,629	7,095	7,611	33,292	6,658
	국비	4,435	4,771	5,105	5,463	5,861	25,635	5,127
	지방비	1,325	1,425	1,525	1,632	1,751	7,657	1,531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2018.9.20. 의결)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연평균 6,007억원 추가 소요 예상

-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연평균 6,007억원(국비 4,379억원, 지방비 1,628억원) 추가 소요 예상(2019년 1월 1일 시행)
  -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모든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아동수당 지급		3,575	6,873	6,870	6,617	6,100	30,035	6,007
	국비	2,606	5,010	5,007	4,823	4,447	21,893	4,379
	지방비	969	1,863	1,862	1,794	1,654	8,143	1,628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라 연평균 733억원 추가 소요 예상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2018.12.27. 의결)

- 기초생활보장(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함에 따라 연평균 733억원(국비 491억원, 지방비 242억원) 추가 소요 예상(2019.4.1. 시행)
  -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019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0만원으로 하고, 2022년 4월 이후부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기초급여액이 매년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659	817	728	720	741	3,665	733
	국비	442	547	487	483	497	2,456	491
	지방비	217	270	240	238	245	1,210	242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법의 일몰연장(5년)에 따라 연평균 1조 3,046억원 추가 소요 예상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2018.12.27. 의결)

- 법의 일몰연장(5년)에 따라 동법에 근거한 재정사업(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이 계속 수행되어 연평균 1조 3,046억원 추가 소요 예상(2019.1.1. 시행)

법의 일몰연장(5년)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단위: 억원)

재정수반요인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법의 일몰연장	4,765	10,568	16,215	17,920	15,761	65,229	13,046

주: 단수조정에 따라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 주요 정책현안 분석

2019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의무지출

사회보험 재정전망 시리즈

–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

2019년도 시행 개정세법 주요 내용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019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의무지출

2019년도 예산 확정 결과, 아동수당, 기초연금, 구직급여 등 9개 복지분야 의무지출 사업 제도 변화

- 복지분야 의무지출은 질병 · 실업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공적연금,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아동수당은 대상자 확대에 따른 증액, 구직급여는 보장성 강화에 따라 전년대비 증액 되었으나 시행시기 조정으로 감액

- 국회는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9개 복지분야 의무지출 사업 중 아동수당과 구직급여 등 4개 사업은 정부안 대비 증액 또는 감액 확정한 반면, 나머지 5개 사업은 정부안을 그대로 확정
  - 아동수당은 대상 확대에 따라 정부안 대비 2,356억원 증액한 반면, 구직급여는 지급기간 연장 등 보장성 강화로 예산은 전년대비 증액되었으나, 시행시기 조정(1월 → 7월)으로 정부안 대비 2,265억원을 감액 확정

2019년 제도변화가 있는 복지분야 의무지출 예산(국비 기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2018 추경(A)	2019			전년대비 증감액(C-A)
			정부안(B)	국회확정(C)	증감액(C-B)	
복지	아동수당	709,619	1,927,127	2,162,729	235,602	1,453,110
	기초연금	9,122,866	11,495,198	11,495,198	-	2,372,332
	장애인연금	600,877	719,735	719,735	-	118,858
보훈	보상금	2,743,789	2,814,255	2,813,124	△1,131	69,335
	4.19혁명공로수당	-	-	1,131	1,131	순증
	간호수당	55,500	54,728	54,728	-	△772
	6.25자녀수당	235,570	260,577	260,577	-	25,007
고용	구직급여	6,157,196	7,409,316	7,182,783	△226,533	1,025,587
	모성보호육아지원	1,311,068	1,455,276	1,455,276	-	144,208
	· 출산전후휴가 급여	298,489	260,394	260,394	-	△38,095
	· 유산사산휴가 급여	827	842	842	-	15
	· 육아휴직 급여	988,577	1,138,832	1,138,832	-	150,255
	·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급여	23,175	34,902	34,902	-	11,727
	·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	20,306	20,306	-	순증

주: 복지·보훈·고용 분야별로 2019년에 제도변화가 큰 순서로 정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이은미·유희수·윤주철·여은구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27·4740·3737·4673)

1. 복지·보훈

아동수당은 2018년에 신규 도입되어 2019년부터 대상을 확대하여 지급

아동수당은 대상자 확대,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단가 인상, 보훈급여는 급여단가 인상

- (대상자 확대) 2018년에는 전체 2인 이상 가구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지원하였으나,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0~5세 모든 아동, 9월부터는 0~6세 모든 아동으로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지급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에 한하여 기준연금액 인상

- (기준연금액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의 월 최대 지급액(기준연금액[1])을 현행 25만원에서 2019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 재정소요(국비 기준)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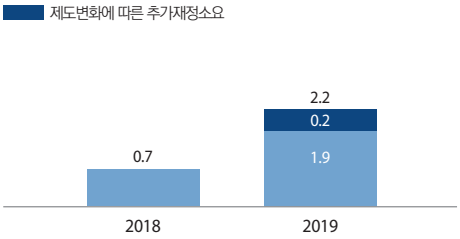

주: 1. 대상자 확대(소득기준 폐지 및 지급 연령 확대(5세~6세 이하))에 따라 0.2조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2. 단수조정에 따른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기초연금 재정소요(국비 기준)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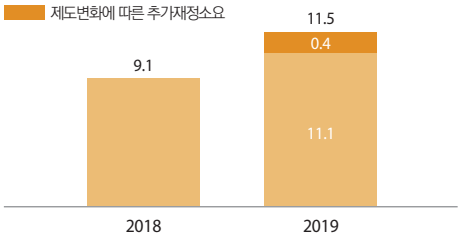

주: 2019년에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을 인상함에 따라 0.4조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18~2027년 기초연금 재정소요 추계」, 2018

장애인연금은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인상

- (기초급여액) 장애인연금은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현행 25만원에서 2019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

1) 기준연금액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같이 감액 사유가 없을 경우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상한액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물가상승률(통계청 고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

보훈급여는 보상금과 4.19혁명공로수당,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급여단가를 인상

- (급여 단가 인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확대를 위하여 보상금 및 4.19혁명공로수당,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등 보훈급여 지급액을 전년대비 각각 3.5% 인상하되, 보상금 중 전몰·순직유직 보상금은 2%p 추가 인상(5.5%), 대통령표창 배우자 및 유족보상금과 부양가족 수당 미성년자녀 보상금은 각각 10만원과 5만원을 추가 인상

장애인연금 재정소요(국비 기준)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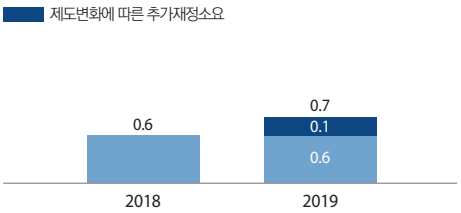

주: 2019년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인상에 따라 0.1조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보훈급여 재정소요(국비 기준)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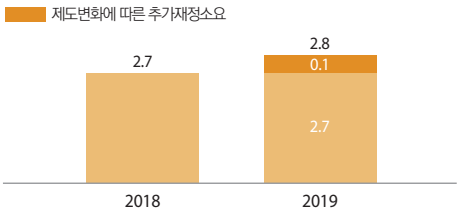

주: 보상금, 4.19혁명공로수당, 6.25자녀수당 급여단가 인상에 따라 0.1조원의 추가재정소요 발생

2. 고용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모성보호육아지원 확대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를 위해 급여 대상자 확대,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연장, 급여일액 인상 등을 추진

- (지급기간 연장 등)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근로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자에 한함)에 대해서도 실업급여를 적용하고,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연장하며, 급여일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 할 계획(다만,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
-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반영)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관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정부안 포함)이고, 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시행 계획으로 예산 반영(일부 법령은 개정)

정부는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보험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출산전후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의 지급수준 등 확대 추진

- (지급수준 인상 등)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수준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기간 연장 및 지급수준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등

●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 반영) 모성보호육아지원 확대 관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정부안 포함)이고, 법 개정을 통해 2019년 7월부터 시행 계획으로 예산 반영(일부 법령은 개정)

구직급여 예·결산 현황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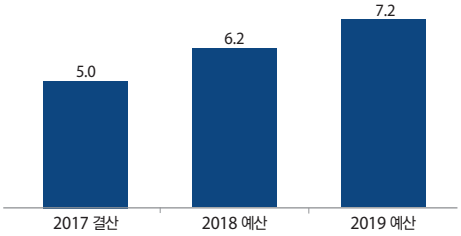

모성보호육아지원 예·결산 현황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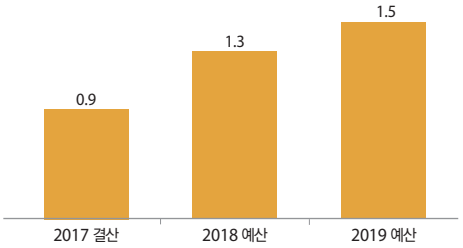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의무지출 제도 개요 및 입법 현황

구분	사업명	제도개요	2019년 제도변화	입법 현황
복지	아동수당	· 지원대상: 2019년 1월부터 0~5세 이하, 9월부터 0~6세 이하 모든 아동 · 지원내용: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 지원대상자 확대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 변경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 → 6세 미만 모든 아동(2019.1.부터 적용), 7세 미만 모든 아동(2019.9.부터 적용)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통과(2018.12.)
	기초연금	·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 월 급여액: 최대 25만원(기준연금액). 단, 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20% 감액	· 소득하위 20% 노인의 기준연금액 인상: 25만원→30만원(2019.4.부터 적용)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대표발의) 통과(2018.12.)
	장애인연금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기초급여: 월 253,750원(최고 지급액 기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인상: 월 25만원 → 30만원(2019.4.부터 적용)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통과(2018.12.)
보훈	보상금	· 지원대상: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 보상금(월 지급액): 70.8~571.4만원(독립유공자 및 유족), 45.3~292.7만원(국가유공자로서 상이 1~7급 및 사망자, 단 공상공무원 제외), 128.2만원(재일학도의용군), 31.7~204.9만원(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자), 32.6~122.8만원(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	· 월 지급액 3.5% 인상 · 전몰·순직유족 보상금 2%p 추가 인상 · 대통령표창 배우자 및 유족 10만원 추가 인상 · 부양가족수당 미성년자녀 5만원 인상(기타 수당 단가는 동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 12.)

(계속)

(계속)

구분	사업명	제도개요	2019년 제도변화	입법 현황
보훈	4.19혁명 공로수당	· 지원대상: 4.19혁명공로자 · 월 지급액: 31.1만원	· 월 지급액 3.5% 인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 12.)
	간호수당	· 지원대상: 상이군경 1~2급 · 월 지급액: 76.3~238.7만원	· 월 지급액 3.5% 인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 12.)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 12.)
	6.25 자녀수당	· 지원대상: 6.25전몰(순직)군경 자녀 중 1명 · 월 지급액: 25.7~128.3만원	· 월 지급액 3.5% 인상 ※ 신규자녀는 제적자녀의 20% 인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18. 12.)
고용	구직급여	· 지원대상: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요건을 충족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 지급기간: 90~240일(연령, 피보험기간 고려) · 급여일액: 평균임금일액의 50%, 상한액 6만원, 하한액 54,216원(최저임금일액의 90%, 일 8시간 근로기준)	· (법령 개정) – 급여일액의 상한액 인상(66,000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상승(60,120원),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자에 한함)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적용 · (법령 개정 전제로 한 예산 반영) – 지급기간 30일 연장 – 급여일액 조정: 평균임금일액의 60%,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80%	· (법령 개정)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제정(2018.8.),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18.12.), 「고용보험법」 개정(2019.1.) · (법령 개정 전제로 한 예산 반영) – 「고용보험법」 개정 예정(2019. 7.)
	출산전후 휴가급여 및 유산사산 휴가급여 (모성보호 육아지원)	· 지원대상: 출산 등 수급요건을 충족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급기간: 3개월(우선지원대상기업), 1개월(대규모기업)[출산전후휴가 급여 기준] · 급여월액: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160만원, 하한액 157.4만원(월 최저임금)	· (법령 개정) – 급여월액의 상한액 인상(180만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상승(174.5만원)	· (법령 개정) – 「2019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제정(2018.8.), –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상한액」 개정(2018.12.)
	육아휴직 급여 (모성보호 육아지원)	· 지원대상: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는 등 수급요건을 충족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급기간: 1년 이내 · 급여월액: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70~150만원), 4개월째부터 40%(50~100만원), 특례 적용 시(아빠의달) 첫 3개월에 한해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 (법령 개정) – 급여월액 인상(4개월째부터 통상임금의 50%, 70~120만원), 특례 적용시(아빠의달) 상한액 인상(250만원)	· (법령 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2018. 1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모성보호 육아지원)	· 지원대상: 30일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는 등 수급요건을 충족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급기간: 1년 이내(육아휴직 기간과 합산) · 급여월액: 통상임금의 80%(50~150만원)에 근로시간 단축비율을 곱한 금액	· (법령 개정 전제로 한 예산 반영) – 지급기간 연장: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2년 – 급여월액 인상: 일 1시간 단축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 (법령 개정 전제로 한 예산 반영)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2019. 7.)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모성보호 육아지원)	(2019년 신규)	· (법령 개정 전제로 한 예산 반영) – 대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는 등 수급요건을 충족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우선지원 대상기업) – 지급기간: 5일 – 급여액: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200만원)	· (법령 개정 전제로 한 예산 반영) –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예정(2019. 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향후 과제

아동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및 지원단가 인상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

- 2019년 1월부터 아동수당 대상자는 모든 0~5세 아동에게 지급하고, 9월부터 모든 0~6세 아동에게 지급하도록 확대되어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지급을 실시
  - 아동수당의 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NABO 추계 기준)는 2019년 3,575억원으로 예상됨

    ※ 2018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95명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2019년도 예산안 심사 시 아동수당의 확대, 출산장려금 및 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 지원제도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 채택
  - 현재 아동수당과 관련하여 대상자 확대(9세 미만, 15세 이하)와 아동수당액 단가 상향 조정(물가상승률 반영, 단계적으로 30만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이 계류 중임

향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한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재정지출 증가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정부는 당초 전체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2021년 30만원으로 일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저소득층 노인에 한하여 그 인상 시기가 2019년으로 앞당겨짐
  - 정부는 기준연금액을 2018년 25만원에서 2021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대안에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만 반영되어 국회를 통과(2018.2.)한 바 있음
  - 금번 「기초연금법」 개정(2018.12. 국회 통과)에 따라 소득하위 20%에 해당하는 노인의 기준연금액 인상 시기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2년 앞당겨져 2019년에 인상
  - 소득하위 20%의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NABO 추계 기준)는 2019년 5,760억원으로 예상됨
- 향후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노인의 기준연금액 인상을 위하여 법개정을 추진할 경우, 재정지출 증가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

사회보험 재정전망 시리즈

–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

본고의 사회보험 재정전망 시리즈는 8대 사회보험의 재정전망을 향후 4회에 걸쳐 제시할 예정

- NABO는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와 정부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여 8대 사회보험의 수입, 지출 및 재정수지 등 재정 변화를 전망하고 있음
  - 8대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
- 사회보험 재정전망 시리즈에서는 다음과 같이 8대 사회보험의 재정전망 결과를 살펴보고자 함
  - 본고에서는 시리즈의 첫 번째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전망 결과 제시

Ⅰ.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Ⅱ. 국민연금·군인연금
Ⅲ. 고용보험·산재보험
Ⅳ. 공무원연금·사학연금

1. 건강보험

1) 제도 개요

2017년 건강보험 수입은 57조 9,990억원, 건강보험 지출은 57조 2,913억원

건강보험은 전 국민의 질병·부상 관련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하는 사회보장제도

-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보험급여는 현물급여(요양급여, 건강검진)와 현금급여(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액 초과분, 임신·출산 진료비,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 등으로 구성
- 저소득층의 의료보장에 대해서는 공적부조제도인 의료급여제도 별도 운영

김윤희
추계세제분석관
(02-788-3738)

2017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7,077억원이며, 누적준비금은 20조 7,733억원

- 2017년 건강보험 수입은 57조 9,990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45%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 지출은 57조 2,913억원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38% 증가

- 2019년 건강보험료율은 6.46% (2018년 6.24%에 비해 3.49% 상승)로 결정
  - 건강보험료율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9. 정부발표)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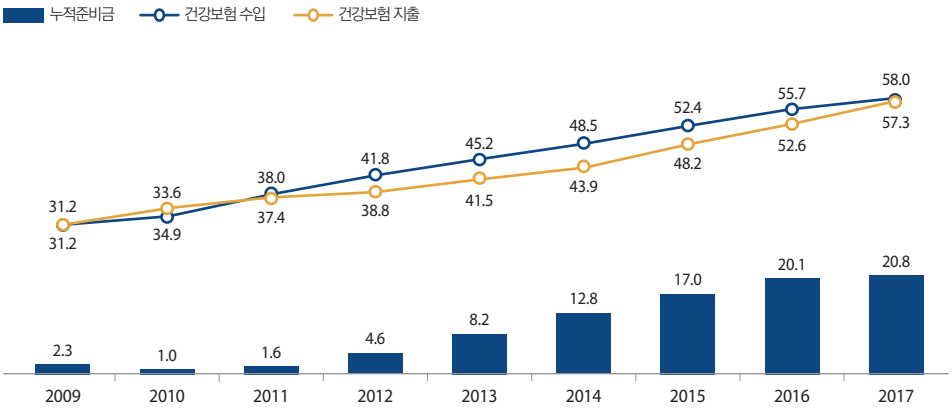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국가예산사업의 구성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로 편성되어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무원·교원의 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등 국가예산사업이 존재

건강보험은 국가재정 외로 운영되고 있으나, 공무원·교원의 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금 및 정부지원금 등 국가예산사업이 존재

-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예산사업으로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이 있음
  - 공무원의 보험료는 가입자와 국가가 50%씩 부담하고, 교원의 경우 가입자 50%, 사용자 30%, 국가가 20%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공무원과 교원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금 발생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은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6%(단,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를 초과할 수 없음)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부담하는 사업

건강보험 재정구조(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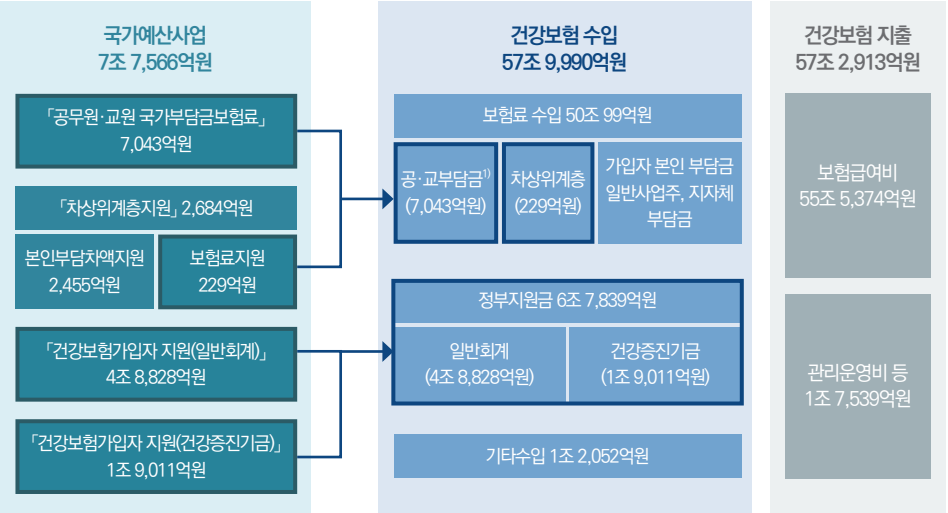

주: 1) 보건복지부의 「공·교부담금 지원」금액만 표시한 것으로 일부 타 부처에서 편성된 공·교부담금 금액은 제외된 값임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2019년도 확정예산은 「공무원·교원 국가부담금보험료」 8,398억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5조 9,271억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국민건강증진기금)」 1조 9,011억원, 「차상위계층지원」의 보험료 지원 229억원 등임

3) 재정전망 결과

향후 10년간 건강보험 재정전망 결과,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며, 누적준비금은 2026년 소진 예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9. 정부발표)을 시행하고,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2022년까지 매년 3.49%, 2023년부터 매년 3.2%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하되[2] 보험료율 8% 상한 규정[3]을 적용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18년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되며, 누적준비금은 2026년 소진 예상

- 다만, 국고지원금 확대 등 추가 재원이 확보될 경우 일정 수준의 적립금 지속 유지 가능

2) 보건복지부는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지난 10년(2007년~2016년)간 평균 수준인 3.2%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2018년 2.04%, 2019년은 3.49%이며, 2022년까지 매년 3.49% 인상할 경우 2018~2022까지 평균 인상률이 3.2%가 됨. 따라서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은 3.49%로 하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는 3.2%씩 인상하는 것으로 가정함

3)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적용한 주요 전제

항목			내용
수입	보험료	건강보험료율	2019년 6.46%에서 2020~2022년 매년 3.49%씩, 2023년~2027년 매년 3.2%씩 인상
	국고지원금	일반회계	2019년까지 예산금액, 2020년 이후 보험료 수입 대비 11.14%(3년 평균 지원 비중) 적용
		건강증진기금	2019년까지 예산금액, 2020년 이후 담배부담금 수입 대비 65% 적용
지출	보험 급여비	정책변화	2017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반영
		의료비 인상률	최근 3년간(2014~2016년) 1인당 의료비 증가율과 해당연도 인구 증가율 고려

- 건강보험 수입은 건강보험료 수입과 정부지원금 등을 합하여 2018년 62.4조원, 2027년 122.7조원
  - 건강보험료율은 2026년에 8%가 넘게 되어 8% 상한 규정 적용 시 2026년부터 8% 유지
-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4.3조원, 2027년에는 127.6조원으로 예상
  - 의료비 추계 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22년에 목표 보장률(70%)을 달성하기 위한 건강보험 급여비 및 건강보험 지출을 추계
  - 건강보험 보장률은 미용·성형 등의 지출을 제외한 의료비 대비 건강보험 급여비로 정의

건강보험 재정전망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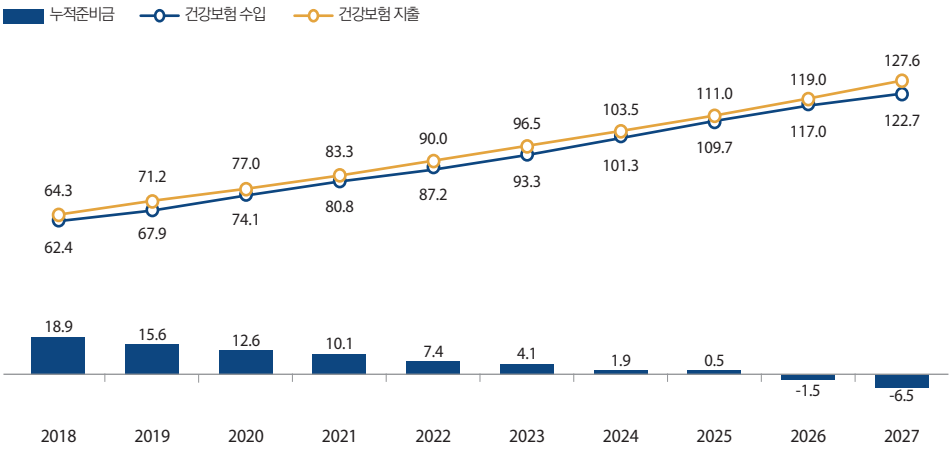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재정절감대책을 추진할 경우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 연장 효과 예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재정절감대책을 추진할 경우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 연장 효과 예상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함께 비효율적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재정절감대책(건강보험 급여비의 1% 절감 목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재정절감대책으로 요양급여비용 사후관리 강화, 경증환자 의료이용 억제, 다빈도 이용자 관리, 요양병원의 기능 개편 등을 제시
- 재정절감대책으로 지출 증가폭 둔화 시 건강보험 지출은 2018년 63.7조원에서 2027년 126.4조원으로 예상되어,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 연장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료율은 2020년 6.96%, 2027년 8.33% 필요

- 재정절감대책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율 8% 상한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는 보험료율은 2020년 7.7%[4] 인상, 이후 연도부터는 2~3% 인상 필요
- 2022년까지 매년 3.49%, 2023년부터 매년 3.2%씩 인상하되 건강보험료율 8%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8%보다 더 높은 요율 적용 시 2027년에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되어 누적준비금은 소진되지 않고 증가

건강보험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한 건강보험료율 전망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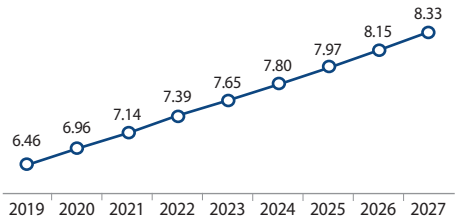

건강보험 누적준비금이 소진되지 않기 위한 건강보험료율 전망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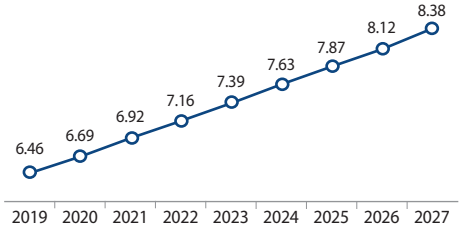

주: 건강보험료율 8% 상한규정 적용하지 않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보험료율(%)의 변화율(%)임

참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63.4%에서 2022년 70%까지 개선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9.) 발표

- 목표 보장률 달성을 위한 세부 정책으로 비급여 해소 및 발생차단, 의료비 상한액 적정관리, 긴급위기 상황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으며, 2019년 2월까지 진행된 주요 사업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통) 선택진료 전면 폐지, 종합병원급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뇌·뇌혈관·특수검사 MRI 건강보험 적용, 상·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노인)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 틀니 및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 노인외래 정액제 개선

  (아동)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여성) 난임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

  (장애인) 장애인보장구(욕창예방방석·이동식리프트) 급여 대상자 확대

-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6조원의 건강보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한 바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

1) 제도 개요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인 자 중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등), 시설급여(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로 구성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운영
  - 건강보험과 별도 운영되나 건강보험료에 연동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보험료 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수는 2009년 29.1만명에서 2017년 57.9만명으로 2배 증가하였으며, 지출은 2009년 1조 8,791억원에서 2017년 5조 4,139억원으로 2.9배 증가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수는 57.9만명, 지출은 5조 4,139억원

-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5조 846억원으로 2009년 이후 연평균 12.2% 증가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5조 4,139억원으로 연평균 14.1% 증가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는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어 2017년 누적준비금은 1조 9,800억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2019년 6.46%)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 7.38% 대비 1.13%p 상승한 8.51%

장기요양보험 재정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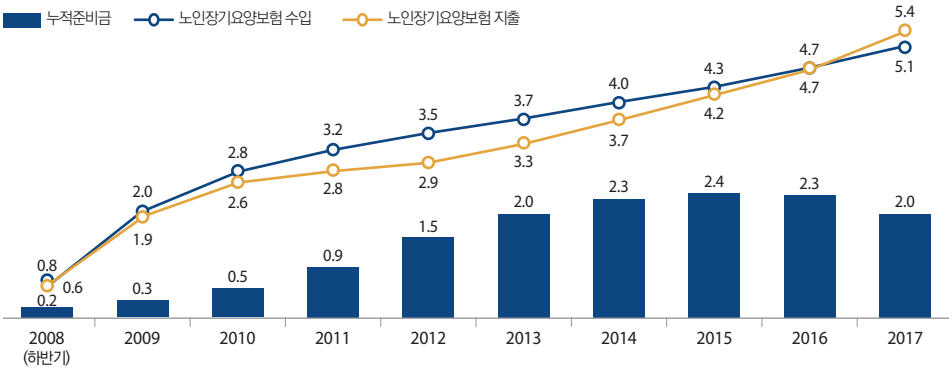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 국가예산사업의 구성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가재정 외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2017년 기준 6,689억원)이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 외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사업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2017년 기준 6,689억원)이 있음

- 2017년 기준 국가예산사업은 공무원·교원 국가부담보험료(475억원), 국고지원금(5,822억원), 의료급여 국가부담금(387억원)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의 13.1%를 차지
- 2019년도 확정예산은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분이 반영되어 예산안 대비 391.5억원이 증액된 1조 351.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구조(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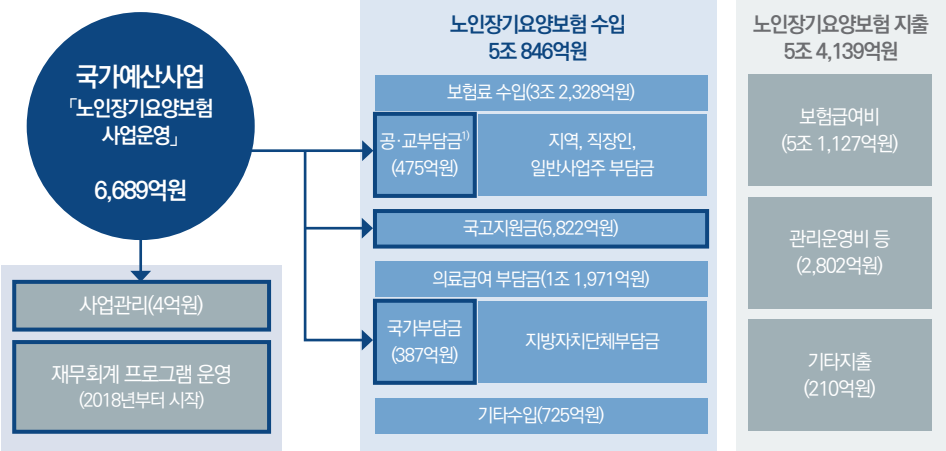

주: 1) 공·교부담금은 공무원·교원의 보험료에 대한 국가부담금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사업만 표기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3) 재정전망 결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8.51%로 현행대로 유지하고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며, 보험료 수입 대비 국고지원 비중을 18.32%로 하여[5] 향후 10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재정전망 결과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향후 10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결과, 재정수지 적자 지속 예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에 적용한 주요 전제

항목			내용
수입	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8.51%)이 유지
		건강보험료율	2019년 6.46%에서 2020~2022년 매년 3.49%씩, 2023~2027년 매년 3.2%씩 인상
	국고지원금		2019년까지는 예산금액, 2020년 이후 보험료 수입 대비 18.32%(5년 평균 지원 비중) 적용
지출	보험급여비	정책변화	2018년부터 시행된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반영
		수가인상률	2018년 11.34%, 2019년 기결정된 5.36%, 2020년 이후 국회예산정책처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재정전망 결과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어(2018년 -0.5조원, 2027년 -2.6조원), 누적준비금은 2022년 소진 예상

5)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 대비 국고지원금 비중의 5년(2013~2017년) 평균은 18.32%임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2018년 6.1조원 → 2027년 13.8조원(연평균 9.6%) 증가 예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18년 6.6조원 → 2027년 16.4조원(연평균 10.6%) 증가 예상

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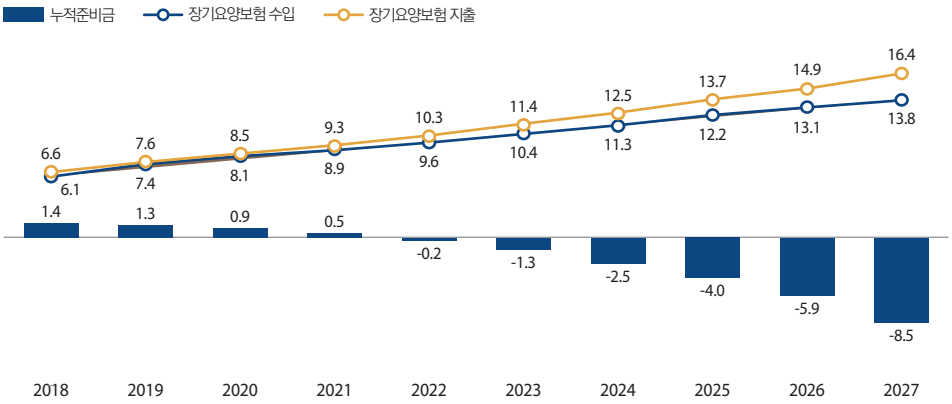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민감도 분석 수행 결과,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여부가 재정전망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재정전망에 적용한 가정을 변동하여 민감도 분석 수행 결과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여부가 재정전망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 장기요양보험료율이 건강보험료율에 연동하여 매년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2021년부터 재정수지가 흑자로 전환된 후 누적준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2027년 6.0조원)할 것으로 예상
- 국고지원금을 20%로 상향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적자는 지속되나, 누적준비금 소진 시기는 1년 지연된 2023년이 될 것으로 예상

민감도 분석(1): 장기요양보험율 매년 인상 시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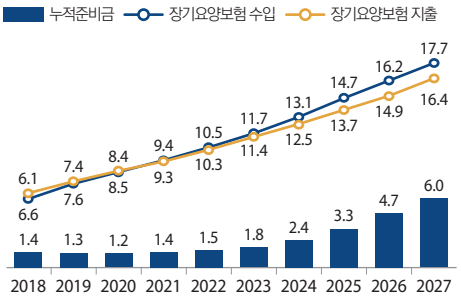

민감도 분석(2): 국고지원금 20% 상향 지원 시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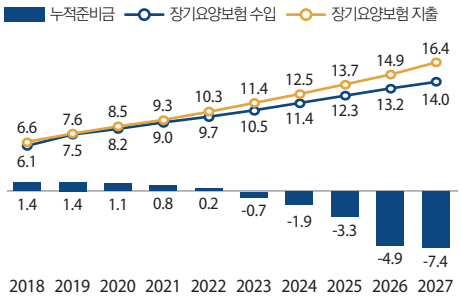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수지 균형을 이루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 8.92%, 2027년 10.54% 필요

- 누적준비금이 보험급여비의 1개월분 이상 유지를 위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8.73%, 2027년 10.64% 필요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위한 보험료율 전망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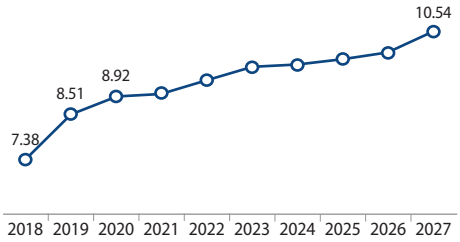

보험급여비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누적준비금 유지를 위한 보험료율 전망 결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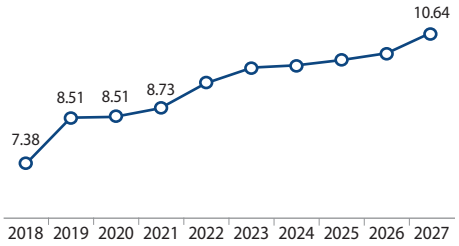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9년도 시행 개정세법 주요 내용

1. 개요

세법개정안이
2018.12.8. 의결

(심사경과) 정부제출 및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거쳐 2018년 12월 7~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2019년도 시행 개정세법이 확정됨

- 기획재정위원회는 575건의 세법개정안(정부안 19건, 의원안 556건)에 대해 10회에 걸쳐 심사한 결과, 17개 법률에 대해 2018.11.30. 대안 의결
-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쟁점법안은 2018.12.8. 기재위 의결

세법개정의 영향을
받는 국세수입
- 정부안: 299.3조원
- 확정: 294.8조원
(4.5조원 감소)

(확정예산) 총수입 예산은 국회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5.3조원이 감액된 476.1조원 확정

-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세수입과 기금수입이 각각 4.5조원, 0.8조원 감액된 반면, 세외수입은 390억원 증액되는 등 총 5.3조원의 총수입이 감액
- 세법개정의 영향을 받는 국세수입의 경우, 당초 정부는 299.3조원 규모를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4.5조원이 감액되어 294.8조원으로 확정

국회 심의에 따른 2019년도 총수입 예산 및 변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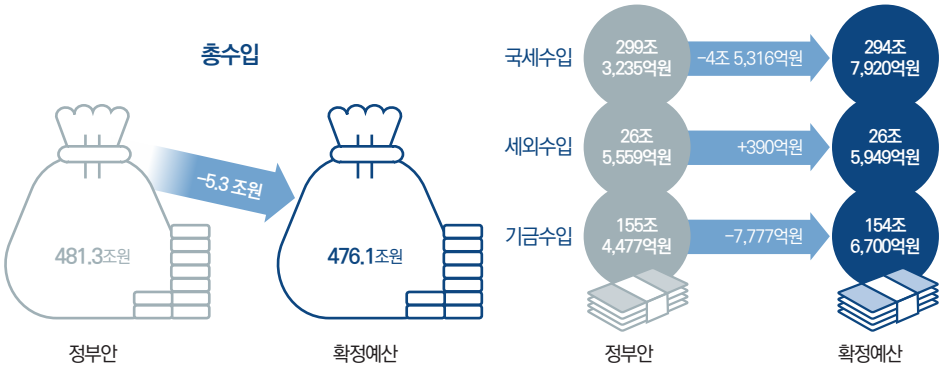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채은동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5)

2. 주요 개정항목 및 특징

1) 주요 개정항목

(EITC·CTC) 서민·중산층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인상

- 근로장려금의 연령요건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등 신청자격을 큰 폭으로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인상하였으며, 자녀장려금은 생계급여수급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지급액을 인상
- 개정세법에 따른 2019년 세수효과: -3.8조원

(종합부동산세) 자산보유에 대한 형평성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강화

- 조정대상지역(서울 전역, 세종 등) 내 2주택 및 3주택 이상 보유 등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인상, 종합합산토지 세율인상, 세부담 상한비율 상향 조정, 과세표준 반영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시행령 사항) 단계적 인상 등 과세가 강화
- 개정세법에 따른 2019년 세수효과: 1.1조원

주요 개정항목
① EITC·CTC 확대
②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③ 지방소비세율 인상

(지방소비세율) 재정분권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4%p 인상

-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인 지방세수를 확충하고자 국세 부가가치세 징수액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
  -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30.)에 따르면, 지방소비세율은 2020년 추가 6%p 인상 계획(15% → 21%)
- 개정세법에 따른 2019년 세수효과: -3.2조원
  - 반대로 지방자치단체는 3.2조원의 지방세액 증가

개정세법의 2019년 세수효과(정부추계): 당초 정부안 vs. 확정 개정세법

(단위: 조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확대	종합부동산세 강화	지방소비세율 인상	기타 항목	전체
당초 정부안(A)	-3.8	0.9	0.0	-0.3	-3.3
국회 심의(B)	-	0.3	-3.2	-1.6	-4.5
개정세법(A+B)	-3.8	1.1	-3.2	-1.9	-7.8

주: 기타 항목에는 유류세 15% 한시적 인하(시행령 사항)에 따른 세수효과 -1.0조원, 자녀세액공제 조정(527억원) 및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37억원) 등 다수의 비과세·감면제도 개정 등이 포함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특징

2018년 개정세법은 세수감소형으로 편성

세수증가형이었던 2015~2017년 개정세법과 달리, 2018년 개정세법은 세수감소형으로 편성

- 2015~2017년 개정세법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15년), 발전용유연탄 세율인상('16년),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16~'17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17년) 등 세수증가형으로 편성
- 반면 2018년 개정세법은 저소득 근로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를 크게 확대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등 세수감소형 세법개정이 이루어짐

연도별 개정세법의 세수효과(정부추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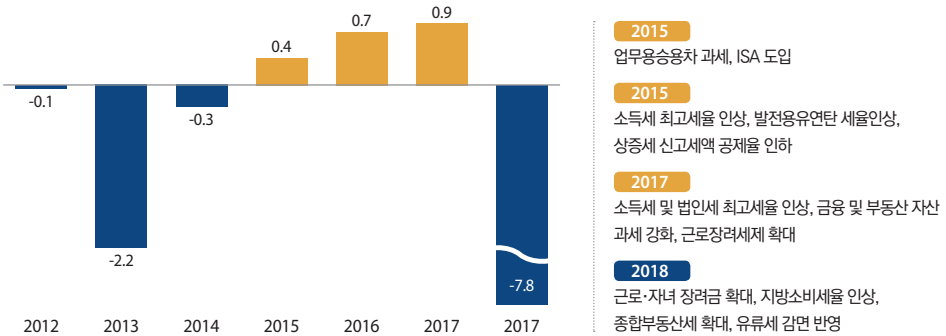

주: 각 연도 정부 발표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상 차년도 세수효과에, 세입예산안과 본예산의 차이를 합산
자료: 정부 각 연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및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정부 세법개정안 이후 주요 정부대책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정부 세법개정안('18.8.31.) 제출 이후 발표된 주요 정부대책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

- 2018년 8월 31일 정부의 세법개정안 제출 이후 9.13.부동산대책, 10.30.지방재정분권대책 등이 추가 발표되면서, 관련 내용이 의원안 형태로 발의되고 개정세법에 반영
- 추가 정부대책에 따른 세입 변동분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사를 통해 조정·반영되었고, 동 변동효과 -4.5조원은 당초 정부안 세수효과(-3.3조원)를 상회하는 수준

개정세법의 2019년 세수효과(정부추계): 정부안 vs. 개정세법

(단위: 조원)

	정부안 ('18.8.31. 제출)	국회 심의·의결에 따른 변동분	개정세법 ('18.12.7~8. 의결)
세수효과(조원)	-3.3	-4.5	-7.8
전체 대비 비중(%)	42.0	58.0	100.0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세목별 개정내역

(국세기본법) 납부지연 가산세와 가산금을 통합하여 납세자 부담 완화 등

국세기본법: 납세자 부담 완화 등

안건	개정내용	세수효과 (NABO 추정, 억원)	최근 개정 연혁
납부지연 가산세와 가산금 통합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 ※ 2020년부터 시행	('20) −117 (연간) −117 (누적) −350	('17) 가산세 배제대상 추가
역외거래 부과제척기간 연장	무신고: 7년 → 10년 과소신고: 5년 → 10년	추정곤란	('16) 예외사유 추가 ('17) 제척기간 특례 보완

주: 1.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하여, 단순 일몰연장은 세수변동이 없음
2. 누적은 2019~2023년 5년간 세수효과를 합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소득세)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확대하고 주택임대소득 과세를 개편

소득세: EITC·CTC 확대 등

안건	개정내용	세수효과 (NABO 추정, 억원)	최근 개정 연혁
근로장려금 확대	소득요건 - 단독가구: 1,3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2,100만원 이하 → 3,0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2,500만원 이하 → 3,600만원 이하	('19) −29,072 (연간) −22,851 (누적) −114,256	('16) 단독가구 연령기준 완화 (50세 이상) ('17) 단독가구 연령기준 완화 (40세 이상), 최대지급액 인상(70~210만원 → 77~230만원) ('18) 단독가구 연령기준 완화 (30대 추가), 최대지급액 인상(77~230만원 → 85~250만원)
	재산요건: 1.4억원 미만 → 2억원 미만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85만원 → 150만원 - 홑벌이가구: 200만원 → 260만원 - 맞벌이가구: 250만원 → 300만원		
	연령요건: 30세 이상 → 폐지		
	지급방식: 연1회 → 반기별 연2회 지급		
자녀장려금 확대	신청자격: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신청 허용	('19) −3,339 (연간) −2,782 (누적) −13,911	('17) 재산요건 완화(1.4억원 → 2억원 미만), 주택요건 폐지 ('18)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는 외국인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50만원 → 70만원		
주택임대소득 과세 개편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기본공제·필요경비율 차등 적용 - 400만원 → (등록/미등록) 400/200만원 - 60% → (등록/미등록) 60/50%	('19) − (연간) 257 (누적) 1,028	('14)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분리과세 전환(2월), 적용시기 2년 유예('16년 3월 시행), 1년 추가 유예('17년 6월 시행) ('16) 적용시기 2년 추가 유예('19년 시행)
	전세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기준 축소 - 시가기준: 3억원 이하 → 2억원 이하 - 적용면적: 60㎡ 이하 → 40㎡이하 - 적용기한 3년 연장: 2018년 → 2021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및 연장	추가공제 대상 추가 - 도서·공연 → 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적용기한 1년 연장: 2018년 → 2019년	('19) − (연간) − (누적) −	('18) 도서·공연사용액 30% 추가공제

(계속)

(계속)

안건	개정내용	세수효과 (NABO 추정, 억원)	최근 개정 연혁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고액기준액: 2천만원 → 1천만원 한도초과액 이월공제기간: 5년 → 10년	('19) −37 (연간) −99 (누적) −495	('14) 세액공제로 전환 ('16) 고액기준 2천만원으로 하향, 공제율 30%로 인상
자녀세액공제 조정	'1인 15만원 공제' 대상 조정 – 만6세 이상 자녀 → 만7세 이상 자녀 (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19) 527 (연간) 619 (누적) 3,094	('14) 세액공제로 전환 ('18) '6세 이하 공제' 폐지, '1인당 15만원 공제' 6세 이상 자녀만 해당

주: 1.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하여, 단순 일몰연장은 세수변동이 없음
2. 누적은 2019~2023년 5년간 세수효과를 합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법인세: 위기지역 및 고용 관련 조세지출 확대 등

(법인세) 위기지역 및 고용 관련 조세지출 확대

안건	개정내용	세수효과 (NABO 추정, 억원)	최근 개정 연혁
위기지역창업기업 세제감면 신설	5년간 100% 세액감면 – 중견·대기업 감면한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수×500만원 적용기한 2021.12.31.	('19) −15 (연간) −60 (누적) −301	신설
초연결 네트워크 시설투자세액공제 신설	투자액의 최대 3% 적용기한 2020.12.31.	추정곤란 * 정부 추계 (연간) −1,400	신설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중 6개월 이상 육아휴직복직자인건비 세액공제 – 5%(중견), 10%(중소) 적용기한 2020.12.31.	('19) – (연간) −330 (누적) −1,320	신설
고용증대세제 청년중심 확대 및 일몰연장	청년정규직 1인당 공제액 상향 – 300~1,100만원 → 400~1,200만원 적용기한 3년 연장: 2018년 → 2021년	('19) −72 (연간) −1,968 (누적) −9,839	('18)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와 청년 고용증대세제 통합
환경보전시설투자지원 확대 및 일몰연장	공제율 인상 – (대/중견/중소) 1/3/10% → 3/5/10% 적용기한 3년 연장: 2018년 → 2021년	('19) −25 (연간) −203 (누적) −1,016	('14) 공제율 조정 (10% → 3/5/10%) ('18) 공제율 축소 (3/5/10% → 1/3/10%)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 폐지	법인세·소득세 감면 폐지 ※ EU가 우리나라를 조세회피처 국가로 지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바 있음	('19) – (연간) 347 (누적) 1,388	(없음)

주: 1.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하여, 단순 일몰연장은 세수변동이 없음
2. 누적은 2019~2023년 5년간 세수효과를 합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소비세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제) 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및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강화 등의 기조가 이어진 가운데, 지방소비세율이 5년만에 인상

안건	개정내용	세수효과 (NABO 추정, 억원)	최근 개정 연혁
지방소비세율 인상(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분: 89% → 85% 지방소비세분: 11% → 15%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동일	('19) −32,750 (연간) −35,633 (누적) −178,164	('10) 지방소비세 5% 신설 ('14) 11%로 인상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연장 및 공제한도 인상 (부가가치세)	우대공제 연장 − 적용기한 3년 연장: 2018년 → 2021년 − 음식·숙박 간이과세자: 기본 2.0%, 우대 2.6% − 그외 사업자: 기본 1.0%, 우대 1.3% 우대공제 공제한도 인상(2021년까지) − 500만원 → 1천만원	('19) −1,536 (연간) −2,119 (누적) −10,596	('08) 우대공제율 신설 일몰 설정 ('15) 2년 연장 ('17) 2년 연장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 과세확대 (부가가치세)	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재화용역 중개 등 과세추가 − 현행: 게임·음성·소프트웨어 등	추정곤란	('15.7.) 국외사업자 전자적 용역과세 도입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점 인상 (부가가치세)	2,400만원 → 3,000만원	('19) −206 (연간) −236 (누적) −1,178	('00) 납부면제점 2,400만원 설정
유연탄 세율인상, 발전용 천연가스 세율인하 (개별소비세)	발전용 유연탄: 36원 → 46원 발전용 LNG: 60원 → 12원	('19) −530 (연간) 1,016 (누적) 5,080	('14) 발전용 유연탄 과세 전환 ('15~'18) 4차례 세율 인상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액 70% 감면 − 2019.1.1.~2019.12.31.	('19) −737 (연간) −983 (누적) −983	('09) 70%, 8개월 ('17) 70%, 7개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몰 연장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간 3년 연장: 2018년 → 2021년	('19) 13,721 (연간) 15,038 (누적) 45,113	('10) 3년 연장 ('13) 3년 연장 ('16) 3년 연장
입국장 면세점 신설 (관세)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입국장 면세점 설치 허용	추정곤란	(없음)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 확대(관세)	특허갱신 횟수 1회 확대 → 대기업 1회, 중소·중견기업 2회	추정곤란	('13) 특허갱신불허 ('15) 중소·중견기업 1회 갱신 허용

주: 1.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하여, 단순 일몰연장은 세수변동이 없음
2. 누적은 2019~2023년 5년간 세수효과를 합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재산세제: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재산세제 강화

(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세제)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재산세제가 강화되었고, 상속·증여세는 제도합리화 등 일부 개정이 이루어짐

안건		개정내용	세수효과 (NABO 추정, 억원)	최근 개정 연혁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세율인상	세율인상, 다주택자 과세강화 - 1주택, 조정대상지역외 2주택: 0.5~2.0% → 0.5~2.7% -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3주택 이상: 0.5~2.0% → 0.6~3.2% ※ 3~6억원 과표구간 신설	('19) 11,836 (연간) 18,229 (누적) 91,145 ※ 부가세 포함	('05) 1/2/3% ('06) 1/1.5/2/3% ('09) 0.5/0.75/1/1.5/2%
	종합합산토지 세율인상	0.75~2.0% → 1.0~3.0%		('05) 1/2/4% ('06) 1/2/4% ※ 과표구간 변경 ('09) 0.75/1.5/2.0%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 시행령 사항	80% → 단계적 100% ('19년 85%, '20년 90%, '21년 95%)		('06) 60% ('07) 70% ('08) 80%
	주택 세부담 상한비율 인상	조정지역 내 2주택: 150% → 200% 3주택 이상: 150% → 300%		('05) 150% ('06) 300% ('09) 150%
	장기보유 세액공제율 인상	15년 이상 보유 시 40% → 50%		('09) 10년 기준 20%/40%
	분납 확대	분납대상: 500만원 → 200만원 초과 분납기간: 2개월 → 6개월	('19) −239 (연간) −239 (누적) −239	('05) 1천만원 초과 경과일 + 45일 ('09) 5백만원 초과 경과일 + 2개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상속세)		사후추징 시 자산처분비율 반영	추정곤란	(없음)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신설 (취득세)		연 합산소득 등 요건충족신혼부부 1년간 취득세 50% 경감	('19) −655 (연간) −655 (누적) −655	('13)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한시적 감면 ('14) 폐지

주: 1. 전년대비 방식(누적법)으로 세수효과를 추계하여, 단순 일몰연장은 세수변동이 없음
2. 누적은 2019~2023년 5년간 세수효과를 합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 지방소비세 확대 논의 배경

지방세를 비롯해 지방재정 수입의 여건이 미흡한 수준

중앙과 지방간 재정의 균형 및 지방의 자체재원 확보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자립도 지표가 최근 10년간 소폭 하락하는 등 지방재정의 여건 개선은 아직 미흡한 수준

-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6]는 2008년 53.9%에서 2018년 53.4%로, 재정자주도[7]는 2008년 79.5%에서 2018년 75.3%로 소폭 하락
  - 2018년 특별·광역시 재정자립도는 65.7%인 반면, 도의 경우 39.0%로 지역간 격차 존재

연도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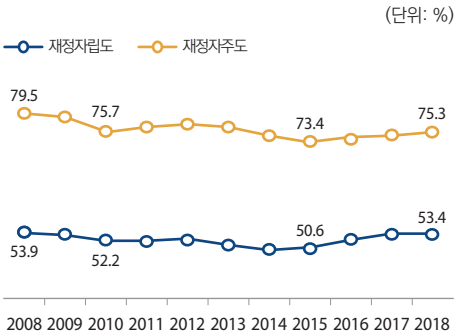

2018년 자치단체별 재정자립도·재정자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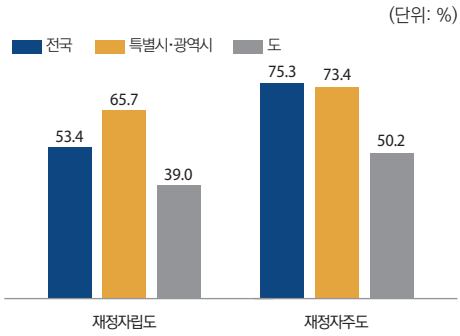

주: 1. 재정자립도 = (지방세 + 세외수입) x100 / 일반회계 예산규모
2. 재정자주도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 + 자주재원(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x 100 / 일반회계 예산규모
※ 전국 평균은 순계 예산규모로, 단체별 평균은 총계 예산규모로 산출

자료: e-나라지표(www.index.go.kr)

지방세는 지방의 주요한 자체수입 중 하나로, 최근 10년간 총조세의 20~25% 수준에서 유지

-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2008년 21.4%에서 2015년 24.6%까지 증가했으나, 이후 소폭 감소해 2017년 23.3% 수준[8]

6) 재정자립도는 자체 재정수입(지방세, 세외수입)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7) 재정자주도는 자체 재정수입뿐만 아니라 자주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통한 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8) 2016년 국세수입은 242.6조원으로 전년(217.9조원)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지방세수입은 75.5조원으로 전년(71.0조원)대비 6.4% 증가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8)

최근 10년간 총조세 대비 국세 및 지방세 비율 현황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세	78.6	78.5	78.3	78.6	79.0	79.0	76.9	75.4	76.3	76.7
지방세	21.4	21.5	21.7	21.4	21.0	21.0	23.1	24.6	23.7	23.3

자료: 행정안전부, 연도별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2. 지방소비세 특징 및 확대 과정(2019년 이전까지)

1) 지방소비세의 특징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공유하는 세목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와 세원을 공유하는 지방세목으로, 지방소비세가 확대되더라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세목

- 지방소비세는 전체 부가가치세 징수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시·도·광역시세
  - 부가가치세와 동일하게 소비를 세원으로 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세수 신장성 및 안정성을 가지는 특징
- 지방소비세 확대 시 내국세인 부가가치세가 동일한 규모로 감소

참고: 관련 법령(2019.1.1.)

- 「부가가치세법」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① 제37조 및 제63조에도 불구하고 납부세액에서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85퍼센트를 부가가치세로, 15퍼센트를 지방소비세로 한다.
- 「지방세법」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지방소비세 확대 시 동일한 규모로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내국세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46%

2)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소비세는 5% 세율로 신설되었으며, 도입 첫해인 2010년 지방소비세수는 2.7조원

2010년 지방소비세는 세율 5%로 도입

-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으로 인한 지방재정 감소[9]를 보전하기 위해 신설

징수된 지방소비세를 민간소비를 기준으로 시·도에 배분하였으며,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

- 각 지역의 소비지수[10]에 가중치(수도권:광역시:그 외=1:2:4)를 적용한 비율에 따라 배분
- 수도권으로 배분된 지방소비세의 35%[11]는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조성해 비수도권으로 재분배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20.00%에서 20.27%로 인상

- 지방교부세율은 변동없이 19.24%로 유지

3) 2014년 지방소비세율 인상

2014년 취득세율 인하[12]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5%에서 11%로 6%p 인상

2014년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인상함에 따라 세수가 크게 확대

- 지방소비세수는 2013년 3.1조원에서 2014년 5.8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17년 7.3조원 수준으로 확대
  - 전체 지방세수 대비 지방소비세 비중은 2013년 5.8%에서 2014년 9.5%로 확대되었으며, 2017년까지 8.5~9.5% 수준을 유지

9) 2008년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과세로 전환 및 세율인하 등이 추진되었으며 이는 주민세(소득세·법인세할) 등 지방세 수입과 더불어 지방교부금 감소에 영향(국회예산정책처, 「감세의 지방재정 영향 분석」, 2009.10.)

10) 통계청에서 확정 발표하는 민간최종소비지출을 백분율로 환산한 각 도별 지수

11)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의 1.75%(=5%(세율)×35%)

12) 2014년부터 기존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 취득가액의 2%, 9억원 초과·다주택자에 대해 취득가액 4%를 취득세로 부과하던 것을 주택 보유수와 관계없이 6억원 이하 1%, 6~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

지방소비세 세수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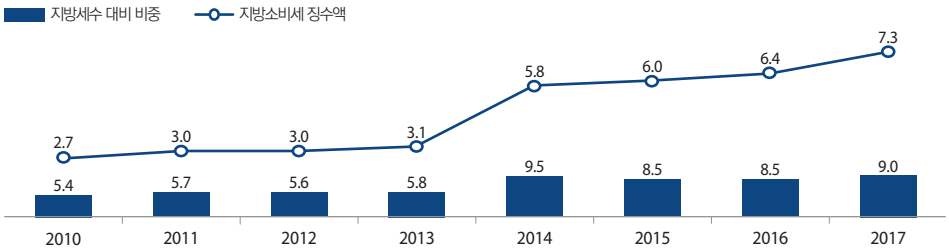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연도별 지방세통계연감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지방소비세율 6%p 인상으로 인해 추가 징수된 세수는 민간소비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의 세율 5%p 분과 별개의 방식으로 배분

-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확보된 세수의 일부를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분의 보전 재원으로 사용[13)]
- 나머지 세수는 각 시·도의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보전비율에 따라 배분

세율 인상에 따른 이전재원의 감소분은 추가 징수된 세수를 배분함으로써 보전하였으며 별도의 교부율 조정 등의 제도변화는 없었음

3. 2019년 지방소비세율 인상 및 세수변동

1) 2018년 12월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법률안을 심의·의결

2018년 세법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인상

2018년 12월 8일 국회에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15%로 4%p 인상

- 20대 국회 초반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한 개정안들이 발의되었는데, 세율을 종전 11%에서 15~21%까지 4~10%p로 인상하는 내용
  - 이찬열의원안·박맹우의원안·김현미의원안·김진표의원안의 경우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13) 지방교부세 보전분은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의 1.1544%(=6%(세율)×19.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분은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의 1.2162%(=6%(세율)×20.27%)

- 2018년 11월 발의된 김정우의원안(「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홍익표의원안(「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소비세율을 15%로 인상하는 내용[14)]
- 2018년 12월 8일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소비세율을 15%로 4%p 인상

제20대 국회의 지방소비세 비율 인상 관련 발의안(2019년 1월 기준)

구분 \ 대표발의(제안일자)	개정 전	이찬열의원 ('16.5.30.)	박맹우의원 ('16.5.30.)	김민기의원 ('16.6.9.)	김현미의원 ('16.7.20.)	김진표의원 ('16.11.1.)	김정우의원·홍익표의원[1)] ('18.11.1.)
부가가치세	89%	80%	84%	84%	79%	84%	85%
지방소비세	11%	20%	16%	16%	21%	16%	15%
적용연도	-	2019년	2022년	2017년	2018년	2018년	2019년

주: 1. 이찬열의원안·박맹우의원안·김현미의원안·김진표의원안 등 단계적 인상안의 경우 최종 세율 기준
1) 김정우의원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보전을 위해 교부율을 20.27%에서 20.46%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15)]

동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인상함으로써 교부금 감소를 보전

- 지방교부세율은 19.24%를 유지

지방소비세율 인상 관련 법률 개정

구분	해당 법령	대표발의자 (제안일자/의결일자)	개정 내용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가가치세법 제72조	기획재정위원장 (2018.12.8./2018.12.8.)	지방소비세율 11%→ 15%
	지방세법 제69조	홍익표의원 (2018.11.1./2018.12.8.)	
교육재정 교부율 인상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3조	박찬대의원 (2018.11.6./2018.12.8.)	내국세의 20.27% → 20.4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4) 2018년 10월 행정부도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포함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발표
(주요 내용) 지방소비세율의 순차적 인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세입 확충과 기능이양 방안 등
-재정분권의 1단계 방안의 하나로 지방소비세율을 두차례 인상(2019년 11% → 15%, 2020년 15% → 21%)을 통해 2020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을 74:26으로 조정
- 2단계 방안은 2022년까지 추가적인 지방세 확충 및 기능이양 등을 통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70:30까지 조정하는 내용
15) 2019년 1월 현재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내용과 관련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관련 법률안(「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무이양 관련 법률안(「지방일괄이양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국회 계류 중

2) 지방소비세율 4%p 인상에 따라 2019년 지방소비세수 3.3조원 증가

지방소비세율 4%p 인상에 따라 지방세수는 향후 5년간 연평균 3.6조원 증가 예상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5%로 인상함에 따라 지방소비세수는 2019년 3.3조원, 2023년 3.8조원 등 2019~2023년 5년 간 총 17.8조원(연평균 3.6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추정방법) NABO의 부가가치세수 전망(2018.12.)에 대해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비율(지방소비세율)을 적용
  - NABO는 경상GDP, 수입·수출, 설비투자 등 부가가치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거시지표(NABO, 2018.10.)를 설명변수로 회귀분석을 통해 향후 부가가치세수를 전망함
- 2019년 지방소비세수는 종전 세율 11% 적용 시 9.0조원에서, 세율을 15%로 4%p 인상함에 따라 12.2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이 3.3조원 수준

2018년 12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내국세의 감소로, 2019년 지방교부세 감소액은 약 0.6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액은 0.7조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

- 2019년 기준 내국세 3.3조원이 감소할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는 0.6조원(내국세의 19.2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는 0.7조원(내국세의 20.27%)으로 추정되나, 2018년 12월 교육재정교부율의 인상으로 교부금이 0.5조원 증가해 감소분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보임

이전재원 감소를 감안 시 지방재정은 향후 5년간 연평균 2.7조원 증가 예상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의 영향을 모두 감안할 경우, 순 지방재정 증가분은 2019년 2.5조원, 2023년 2.9조원 등 2019~2023년 5년 간 총 13.4조원(연평균 2.7조원) 수준

2018년 12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재정 변화 추정(NABO)

(단위: 조원)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연평균
지방소비세율 4%p 인상	11%인 경우(A)	9.0	9.4	9.8	10.2	10.6	48.9	9.8
	2019년 이후 15%(B)	12.2	12.8	13.3	13.9	14.4	66.7	13.3
	지방세수 증가(C=B−A)	3.3	3.4	3.6	3.7	3.8	17.8	3.6
지방교부세 감소(D=C×19.24%)		−0.6	−0.7	−0.7	−0.7	−0.7	−3.4	−0.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E=C×20.46%)	−0.7	−0.7	−0.7	−0.8	−0.8	−3.6	−0.7
	교부율 인상(F=내국세×(20.46%−20.27%))	0.5	0.5	0.5	0.6	0.6	2.7	0.5
순 지방재정 증가분(G=C+D+E+F)		2.5	2.6	2.7	2.8	2.9	13.4	2.7

주: 1. 내국세 및 부가가치세수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2018.12)을 바탕으로 함
2. 지방소비세수는 부가가치세수에 대한 단순비율로 추정하였으며, 과년도분 등은 감안하지 않음
3. 조원 단위로 표기함에 따라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결어

지방소비세율 4%p 인상에 따라 향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보이는 재원의 규모는 2019~2023년 5년 간 총 13.4조원 수준으로 전망

지방소비세율 4%p 인상에 따라 향후 5년간 지방세수는 17.8조원, 순 지방재정 증가분은 13.4조원 증가 예상

- 2018년 12월 부가가치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소비세율이 4%p 인상됨에 따라 지방세수는 2019~2023년 5년 간 총 17.8조원(연평균 3.6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9~2023년 간 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감소(3.4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3.6조원) 및 교부율 인상에 따른 교부금 증가(2.7조원)가 발생
  - 이전재원의 변동을 감안할 때 순 지방재정 증가분은 2019~2023년 5년 간 총 13.4조원(연평균 2.7조원)

정부는 이번 세율 인상분에 대해서도 지역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재원확충의 수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지방소비세율 인상은 세입 외 이전재원의 변화도 야기하기 때문에, 각 지역별 보통교부금 의존도에 따른 재원변화를 모두 감안하는 정교한 제도 운영이 필요

국내외 추계세제 동향

2018년 국세수입 실적 및 동향

글로벌 납세환경 변화와 시사점

– 「Paying Taxes 2019」(World Bank)를 중심으로 –

캐나다 국민연금 재정개혁 사례

대체복무제도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비용추계

2018년 국세수입 실적 및 동향

1. 2018년 국세수입 실적

2018년 국세수입은 293.6조원으로, 2017년 대비 28.2조원(10.6%) 증가하였고, 예산을 25.4조원(9.5%) 상회

-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법인세 증가(19.9%), 명목임금 상승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소득세 증가(12.5%) 등으로 전년대비 10.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2018년 국세수입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17년 실적	'18년		'17년 실적대비		'18년 예산대비		'13~'17년 연평균 증감률
		예산	실적	증감액	증감률	차이	차이율	
총국세	265.4	268.1	293.6	28.2	10.6	25.4	9.5	7.1
소득세	75.1	72.9	84.5	9.4	12.5	11.6	15.9	11.9
- 종합소득세	16.0	16.7	17.5	1.4	8.9	0.8	4.8	10.2
- 양도소득세	15.1	10.3	18.0	2.9	19.1	7.7	75.3	22.8
- 근로소득세	34.0	35.7	38.0	4.0	11.7	2.3	6.4	11.6
법인세	59.2	63.0	70.9	11.8	19.9	7.9	12.5	7.8
상속증여세	6.8	6.2	7.4	0.6	8.5	1.2	19.6	12.1
부가가치세	67.1	67.3	70.0	2.9	4.4	2.7	4.0	4.6
증권거래세	4.5	4.0	6.2	1.7	38.4	2.2	56.1	10.0
기타	52.8	54.7	54.6	1.8	3.4	-0.1	-0.3	3.0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세목별로 법인세(+11.8조원, 19.9%), 소득세(+9.4조원, 12.5%), 부가가치세(+2.9조원, 4.4%) 등 주요 세목에서 모두 견실한 증가세를 나타냄
- 부동산시장·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로 양도소득세(+2.9조원, 19.1%)와 증권거래세(+1.7조원, 38.4%)도 각각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예산대비 대규모 초과세수(+25.4조원)는 보수적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전년대비 1.0% 증가한 268.1조원)도 일부 요인으로 작용
  - 예산대비 차이(조원): ('16 본예산/추경) 19.6/9.9 → ('17 본예산/추경) 23.1/14.3 → ('18) 25.4

백경엽
추계세제분석관
(02-788-4746)

국세수입 징수실적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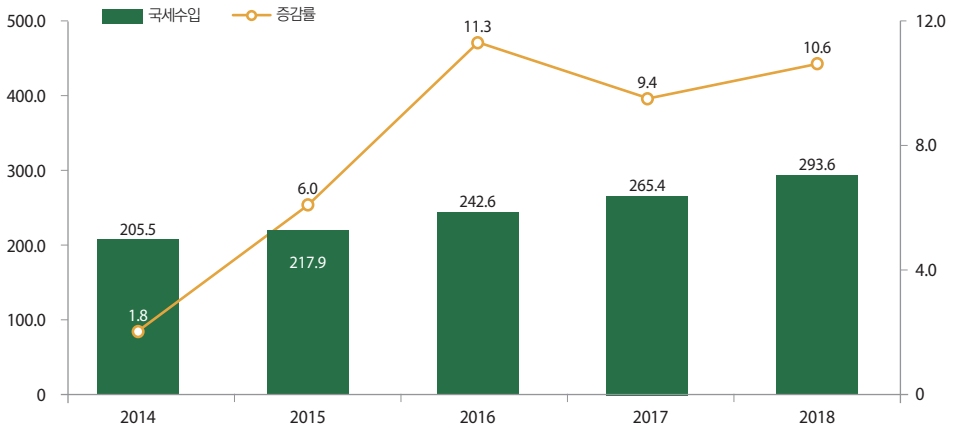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최근 7년간 국세수입 예결산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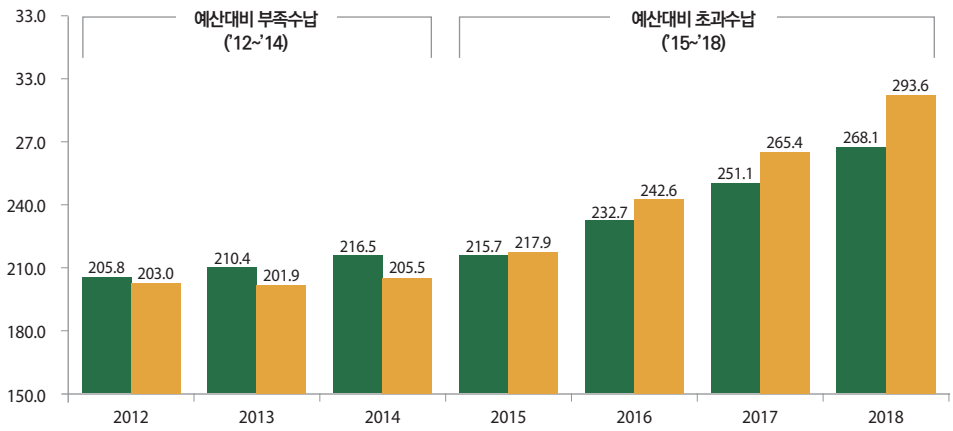

주: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2012년, 2014년, 2018년은 본예산 기준이며, 나머지 연도는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국세수입 실적 개선 원인

법인이익 개선

-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 저금리 지속에 따른 원가 절감 등으로 상장법인의 2017년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
  - 유가증권 상장법인 세전순이익(조원): ('16) 111.8 → ('17) 160.0(39.5% 증가)
    ※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 세전순이익(조원): ('16) 17.7 → ('17) 49.6(180.5% 증가)
  - 외감법인 매출액 세전순이익 증가율(%): ('16) 6.0 → ('17) 7.6
  - 수출액(통관기준 억달러): ('16) 4,955 → ('17) 5,737(15.8% 증가)
- 법인세는 전년대비 11.8조원(19.9%) 증가, 예산대비 7.9조원(12.5%) 상회

소득세수의 견실한 증가세 지속

- 명목임금 상승, 소득 상위구간에 대한 세율 인상에 따른 유효세율 상승 등으로 소득세수 증가
  - 명목임금 증가율 추이(%): ('14) 2.4 → ('15) 3.0 → ('16) 3.8 → ('17) 3.3 → ('18.11.) 5.3
  - 임금근로자수(만명): ('17) 1,993.4 → ('18) 2,008.4(전년대비 15.0% 증가)
  - 총급여 8,000만원 초과자 실효세율('13~'18년 누적): 0.8~3.5%p 상승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3억원 초과 38 → 40%,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 → 42%
- 근로·종합소득세는 전년대비 각각 4.0조원(11.7%), 1.4조원(8.9%)의 견조한 증가, 예산대비 각각 2.3조원(6.4%), 0.8조원(4.8%) 상회

부동산 시장의 가격상승세 지속

- '18년 부동산 시장은 가격상승세 지속, 거래량은 전년대비 감소
  - '18년 부동산 가격상승률(전년대비): 지가 4.6%, 주택 1.1%(수도권 3.3%)
  - '18년 부동산 거래량(전년대비): 토지 -5.3%, 주택 -12.4(수도권 -8.4%)
- 양도소득세는 전년대비 2.9조원(19.1%) 증가, 예산대비 7.7조원(75.3%) 상회,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대비 0.2조원(13.4%) 증가, 예산대비 0.1조원(5.2%) 상회

기타 요인

- 저금리 지속 등의 영향으로, 주식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전년대비 1.7조원(38.4%), 예산대비 2.2조원(56.1%)의 높은 증가세를 시현

  - '18년 거래대금 증가율(전년대비): KOSPI 23.5%, KOSDAQ 34.1%

참고: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및 예산

(단위: 조원, %)

구 분	'17년 실적	'18년						'19년	
		예산	실적	'17년 대비		예산대비		예산	'18년 실적대비(%)
				증감액	%	차이	%		
총국세	265.4	268.1	293.6	28.2	(10.6)	25.4	(9.5)	294.8	(0.4)
일반회계	258.5	260.8	285.9	27.4	(10.6)	25.1	(9.6)	287.2	(0.4)
소 득 세	75.1	72.9	84.5	9.4	(12.5)	11.6	(15.9)	80.4	(△4.8)
- 종합소득세	16.0	16.7	17.5	1.4	(8.9)	0.8	(4.8)	17.8	(1.8)
- 양도소득세	15.1	10.3	18.0	2.9	(19.1)	7.7	(75.3)	14.2	(△21.4)
- 근로소득세	34.0	35.7	38.0	4.0	(11.7)	2.3	(6.4)	37.2	(△2.1)
법인세	59.2	63.0	70.9	11.8	(19.9)	7.9	(12.5)	79.3	(11.7)
상속세및증여세	6.8	6.2	7.4	0.6	(8.5)	1.2	(19.6)	7.2	(△1.8)
- 상속세	2.3	2.2	2.8	0.5	(20.9)	0.7	(30.5)	2.7	(△4.3)
- 증여세	4.4	4.0	4.5	0.1	(1.9)	0.5	(13.7)	4.5	(△0.2)
부가가치세	67.1	67.3	70.0	2.9	(4.4)	2.7	(4.0)	68.8	(△1.8)
개별소비세	9.9	10.2	10.5	0.6	(6.0)	0.3	(2.7)	10.3	(△1.4)
증권거래세	4.5	4.0	6.2	1.7	(38.4)	2.2	(56.1)	4.5	(△27.4)
인지세	0.9	0.9	0.9	△0.0	(△1.6)	△0.1	(△5.9)	0.9	(7.1)
과년도수입	4.4	3.4	4.4	0.0	(0.9)	1.0	(28.5)	4.3	(△3.9)
교통에너지환경세	15.6	16.4	15.3	△0.2	(△1.4)	△1.1	(△6.4)	14.8	(△3.6)
관세	8.5	9.4	8.8	0.3	(3.4)	△0.6	(△6.4)	9.1	(2.7)
교육세	5.0	5.2	5.1	0.1	(1.8)	△0.1	(△2.8)	4.9	(△4.6)
종합부동산세	1.7	1.8	1.9	0.2	(13.4)	0.1	(5.2)	2.8	(52.1)
특별회계	6.9	7.3	7.7	0.8	(11.7)	0.4	(5.0)	7.6	(△0.8)
주세	3.0	3.5	3.3	0.2	(7.5)	△0.2	(△6.7)	3.4	(5.3)
농특세	3.8	3.8	4.4	0.6	(15.1)	0.6	(15.7)	4.2	(△5.4)

자료: 기획재정부, 「2018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결과」 보도자료(2019.2.8.)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글로벌 납세환경 변화와 시사점

– 「Paying Taxes 2019」(World Bank)를 중심으로 –

1. 개관

세계은행은 약 190개 국가의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납세환경을 조사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를 담은 『Paying Taxes 2019』를 발간(2018.11)

- 매년 국가별 세무행정시스템의 효율성과 기업이 부담하는 총 조세 및 기여금 수준을 조사, 납세환경에 대한 국제 동향을 제공
  - 다국적 회계컨설팅 그룹인 PwC(PricewaterhouseCoopers)와 함께 약 190개 국가의 중간 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기준 사례 연구 실시

세계은행은 2004년부터 190개 국가의 납세환경을 분석, 올해는 국가별 납세환경 순위를 발표

Paying Taxes 조사는 2004년부터 실시되었으며, 4대 납세환경지표(신고납부 소요시간, 납부 횟수, 총 조세 및 기여금 부담률, 사후절차 지수)를 측정. 올해는 동 지표를 점수화하여 국가별 납세환경 순위를 부여

- 2004년부터 신고납부 소요시간, 세금납부 횟수, 총 조세 및 기여금 부담률을 측정, 사후 세무조사 등 세정 효율화 지표인 사후절차 지수는 2015년부터 측정
- 올해는 4대 납세환경지표를 점수화(Paying Taxes Score)하여 국가별 납세환경 순위(Paying Taxes Rank)를 부여

한눈에 보는 『Paying Taxes 2019』

지표	글로벌 평균	개념
신고납부 소요시간 (Time to Comply)	237시간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각종 기여금의 신고 준비, 신고 및 납부(원천징수 포함)에 소요된 시간
납부횟수 (Number of Payments)	23.8회	과세연도 동안의 주요 세금(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및 각종 사회보장기여금의 납부 횟수
총 조세 및 기여금 부담률 (Total Tax & Contribution Rate)	40.4%	해당 기업의 세전 이윤에서 동 기업이 부담한 총 조세와 각종 사회보장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
사후절차지수 (Post-filing Index)	59.6점	과세당국의 공식 세무조사 및 감사를 포함, 사후적인 세정시스템 효율성을 측정한 점수(100점 만점, 100점에 가까울수록 효율적)

주: 2017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임
자료: World bank, 「Paying Taxes 2019」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태정림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47)

2. 최근 글로벌 납세환경 트렌드

(신고납부 소요시간) 신고·납부 등 납세의무 이행에 소요된 시간은 2017년 기준 평균 237시간으로 전년대비 2시간, 2004년 대비 84시간 감소

- 신고납부 소요시간의 감소는 실시간 온라인 세무신고시스템 구축, 세무회계 소프트웨어의 보급 및 확산과 같은 정보통신 기술의 진보에 기인

(납부횟수) 주요 조세 및 각종 기여금의 납부횟수는 2017년 기준 평균 23.8회로 전년대비 0.2회, 2004년 대비 10.3회 감소

-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존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의 통합 및 확장이 추진됨에 따라 납부횟수 또한 신고납부 소요시간과 유사한 추세로 감소

(총 조세 및 기여금 부담률) 기업이 부담하는 총 조세 및 기여금 부담률(TTCR)은 2017년 기준 평균 40.4%로 전년과 동일, 2004년 대비 12.71%p 감소

- 글로벌 평균은 2004년 53.11%에서 2010년 45.62%로 대폭 감소한 후 40%대 수준을 유지

소요시간, 납부횟수, 총 조세 및 기여금 부담률 추이(글로벌 평균)

(단위: 시간, 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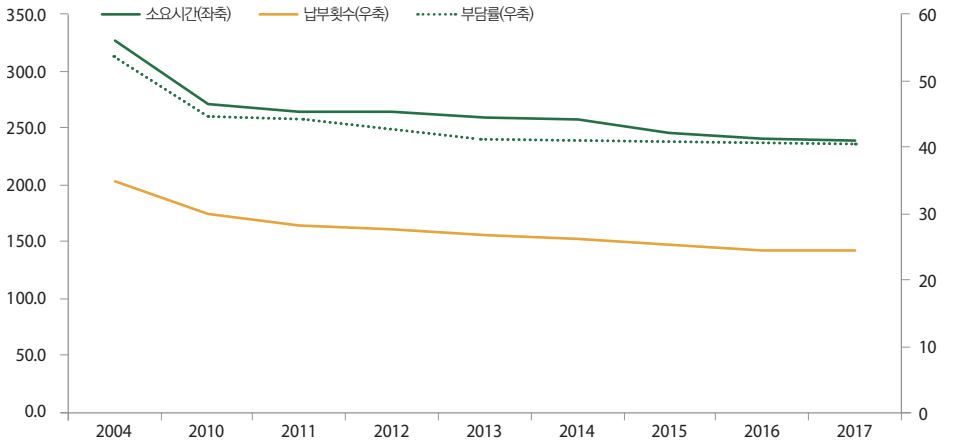

주: 1. 납부횟수는 전자적 방식으로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1회로 집계(관련한 추가적인 신고·납부 또한 납부횟수는 기존 1회로 집계)
2. 2018년 시행되는 2017년 세제개편의 영향은 차년도 보고서에서 평가될 예정

자료: Paying Taxes, Data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주요 납세환경지표는 2004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

(사후절차 지수)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등 사후절차 지수(Post-filing index, PFI)는 2017년 기준 전세계 평균 59.6/100점으로 전년대비 0.2점 증가

- 올해로 3번째 조사된 동 지수는 기업의 세무신고 및 납세 이후의 사후적 납세환경에 대한 평가로서, 100점에 가까울수록 보다 효율적임
  - 낮은 사후절차 지수는 일반적 세무신고에 대해서도 사후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되거나, 복잡한 추가 조치가 요구되는 납세환경을 의미

3. Paying Taxes로 본 한국의 납세환경

2017년 기준 한국의 납세환경은 총 189개국 중 24위, 주요 납세환경지표 모두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

2017년 기준 한국의 Paying Taxes 점수(4대 납세환경지표 점수를 종합)는 86.9점이며, Paying Taxes 순위는 189개국 중 24위로 집계됨

- Paying Taxes 점수로 본 한국의 납세환경은 OECD 평균(83.3점)을 상회하고, 호주(85.6), 일본(71.1) 및 중국(67.5)과 비교하여 우수한 수준
- 4대 납세환경지표 모두 글로벌 평균 수준을 상회하며, 총 조세 및 기여금 부담률(TTCR)과 사후절차 지수의 경우 OECD 평균 대비 양호

한국의 Paying Taxes 점수(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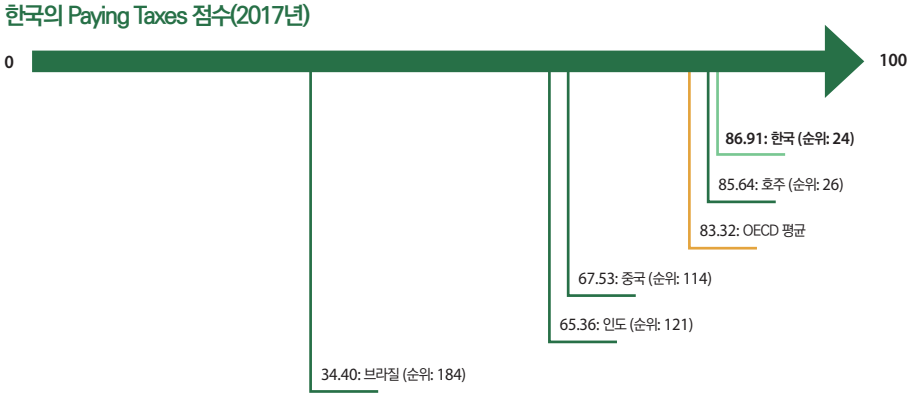

주: Paying Taxes 점수는 개별 납세환경지표의 최고값과 최저값을 기준으로 재환산하여 산정하며, 지표별 가중치는 25%임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www.doingbusiness.org)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4대 납세환경지표로 본 한국(2017년)

납세환경지표	한국	OECD 평균	글로벌 평균	우수사례
신고납부 소요시간(시간)	188.0	159.4	237.0	49(싱가폴)
납부횟수(회)	12.0	11.2	23.8	3(홍콩)
총 조세 및 기여금 부담률(%)	33.1	39.8	40.4	-
사후절차 지수(점)	93.93	84.41	59.6	98.85(홍콩)

주: 각 지표별 환산점수는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음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 및 Paying Taxes, data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한국의 납세환경지표 현황(2017년)

한국의 주요 납세환경지표 추이(2004년~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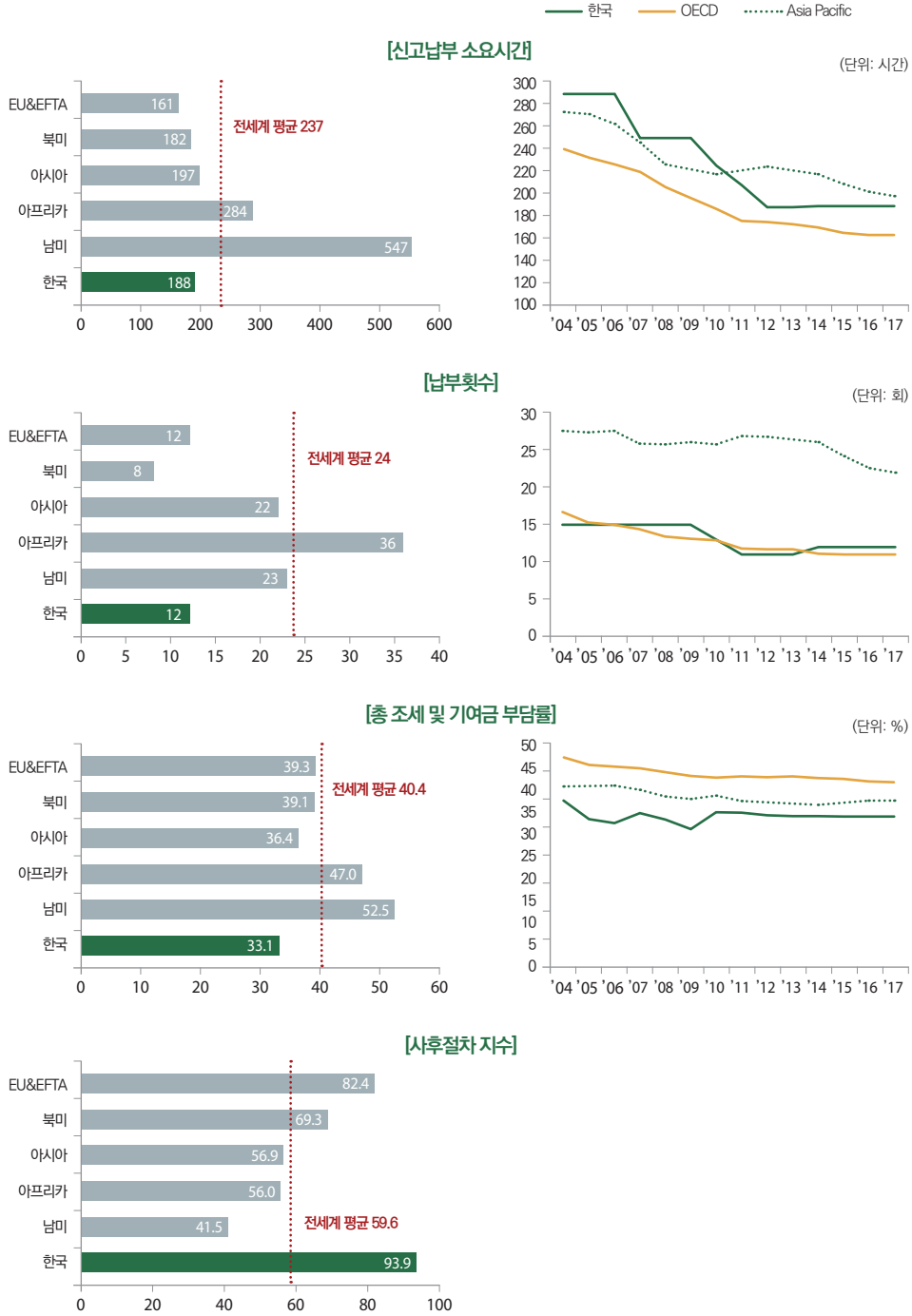

주: 사후절차 지수는 2016 회계연도부터 발표됨

자료: World bank, Doing business data, Paying Taxes, data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정리

4. 시사점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경제·사회적 변화 뿐 아니라 이에 수반한 과세가능 소득, 세무행정 관련 납세환경의 변화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

- 기술 진보는 조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징수 방식 등 세무행정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전반적인 납세환경 개선에 기여
  - 새로운 기술의 출현 및 확산은 국내원천소득에 기반한 전통적 개념의 조세 부과 및 징수 방식의 변화를 초래
- 납세환경 개선은 납세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감소 뿐 아니라 과세당국 관점에서 온라인 보고 시스템에 기반한 실시간 조사·감독과 같은 변화를 수반
  - 온라인 세무행정시스템을 포함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납세환경 구축은 납세의무자의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고 잠재적 세원관리에도 긍정적 효과
- 세계은행은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시스템과 일관되고 예측가능한 납세환경의 중요성을 강조
  - 기업의 투자 결정 및 지역선정은 세율이 아닌 조세확실성에 더 큰 영향을 받음. 조세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접근은 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글로벌 납세환경 개선은 기술 발전에 기인, 한국 또한 국세행정시스템 등의 영향으로 OECD 평균에 근접

세계은행의 4대 납세환경지표로 평가한 한국의 납세환경은 Paying Taxes 조사가 시작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 전자정부 기반의 국세행정시스템 활용을 통해 주요 납세환경지표의 수준은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며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수준
  - 단, 2012년 이후 정체된 모습인 신고납부 소요시간 지표의 개선 노력 필요

캐나다 국민연금 재정개혁 사례

캐나다 정부는 2016년 6월 캐나다 국민연금(CPP; Canada Pension Plan)의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연금급여액도 인상하는 개혁 실시[1)]

CPP는 2016년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연금개혁 실시 (2019년부터 적용)

- 연금혜택 확대는 2015년 11월 출범한 캐나다 새 정부의 주요 공약이었으며, 2016년 6월 연방정부와 10개 주정부가 CPP 개혁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개혁안 통과
  - 기업들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고용주 부담금 증가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지만, 여론조사에서 연금개혁안 찬성비율이 과반을 넘는 등 높은 개혁 찬성 여론에 힘입어 개혁 추진 가능

CPP 개혁은 CPP 연금급여액을 인상하여 은퇴자들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여론 등을 반영하여 추진

- 실제로, 은퇴연령에 가까운 가구의 상당수(약 24%)가 노후에 필요한 표준생활비(은퇴 전 소득의 60%)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2)]
- 퇴직연금 가입자 중 표준생활비 미확보자는 17%인 반면, 퇴직연금 미가입자 중 표준생활비 미확보자는 33%에 달하는데, 퇴직연금 가입자 비중이 감소하고 있어 노후소득 수준 저하
  - 퇴직연금 가입비율: 1977년 35%에서 2012년 25% 이하로 감소[3)]

CPP 개혁의 주요 내용은 소득대체율[4)]을 25%에서 33.3%로 인상하고, 보험료율을 9.9%에서 11.9%로 인상

CPP 개혁: 소득대체율 25→33%, 보험료율 9.9→11.9% 인상

- (소득대체율) 2019~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25%에서 33.3%로 8.3%p 인상
- (보험료율) 2019~2023년까지 점진적으로 9.9%에서 11.9%로 2%p 인상

1) 본 원고는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Backgrounder: Canada Pension Plan (CPP) Enhancement'에서 주로 인용
2) 자료: Survey of Financial Security 2012 and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calculations
3) 자료: Statistics Canada
4) 소득대체율은 연금급여를 가입자의 재평가된 생애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을 의미

박연서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55)

CPP의 연도별 보험료율 인상 계획

(단위: %)

		2018(개혁 전)	2019	2020	2021	2022	2023
사업장	고용주	4.95	5.10	5.25	5.45	5.70	5.95
	피고용인	4.95	5.10	5.25	5.45	5.70	5.95
자영업자		9.90	10.20	10.50	10.90	11.40	11.90

자료: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Backgrounder: Canada Pension Plan (CPP) Enhancement(2016.9)

- (소득상한금액) 2024~2025년 동안 14% 인상(2025년 인상 전 $72,500 → 인상 후 $82,700 예상)[5)]
  - 소득상한금액(YMPE; Yearly Maximum Pensionable Earnings): 2016년 기준 $54,900

CPP 개혁으로 노후에 필요한 표준생활비 미확보 가구 감소 기대 (110만→82.4만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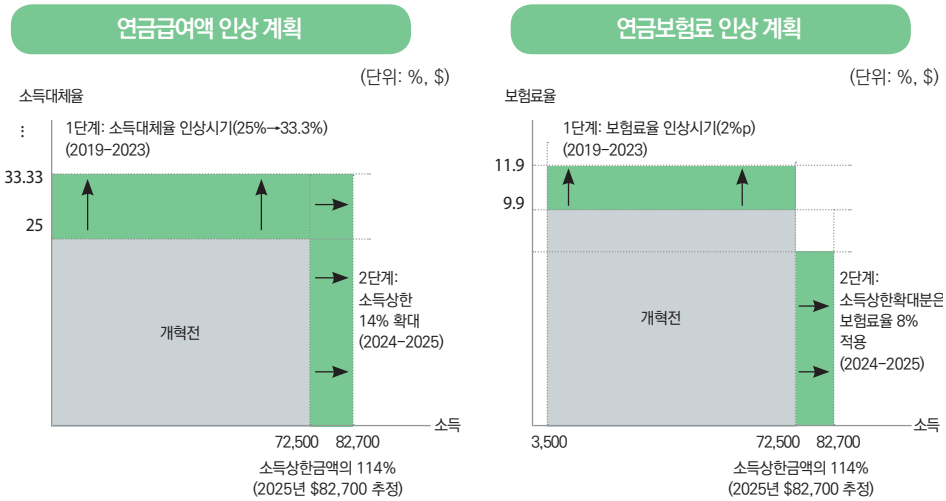

자료: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Backgrounder: Canada Pension Plan (CPP) Enhancement(2016.9)

캐나다 정부는 금번 개혁이 노후에 필요한 표준생활비를 확보하지 못한 은퇴자들의 비중을 감소시키는 등 전반적 노후소득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표준생활비를 미확보한 가구는 현행 110만 가구(24%)에서 CPP 개혁 후 82.4만 가구(18%)로 감소 예상
- CPP 연금 급여액 증가는 퇴직연금 가입자 비중 감소에 따른 개인연금의 역할 감소 보완 기대
- CPP 개혁은 특히 젊은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5) 본 원고의 $는 캐나다 달러(CAD)를 의미, $1=835.04원(2019.2.21. 기준)

캐다나 정부는 CPP 개혁이 장기적으로 캐나다의 고용과 경제에 긍정적 역할 미칠 것으로 기대

- CPP 기여금이 증가하여 적립금이 누적됨에 따라 저축이 증가하고 투자자금이 증가
- 장기적으로 실질GDP는 CPP 개혁 이후 0.05~0.09%p 높아지고, 고용은 0.03~0.06%p 높아질 것으로 예상

캐나다의 CPP 개혁 사례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국민연금 재정개혁 방안 논의과정에 참조 가능

캐나다 CPP 개혁은 국민연금 재정개혁방안 논의에 참조 가능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2018.12.24.)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현행유지,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 ①과 ② 등 총 4가지 재정개혁 방안 제시
  - 그 중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 ①과 ②는 캐나다 개혁과 유사하게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모두 인상하는 방안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의 4가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현행유지 방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②
주요 내용	소득 대체율	소득대체율 40%[1]	소득대체율 40%[1] + 기초연금 40만원	소득대체율 45%[2]	소득대체율 50%[2]
	보험료율	보험료율 유지 (9%)	보험료율 유지 (9%)	'31년 12%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36년 13% ('21년부터 5년마다 1%p씩 인상)
	기초연금 수준	'21년 30만원	'21년 30만원 '22년 40만원	'21년 30만원	'21년 30만원
정부	기금소진시기	2057년	2057년	2063년	2062년

주: 1)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은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40%에 도달한 뒤 유지
2) 소득대체율 인상은 2021년부터 적용
자료: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018.12)

-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연금급여액을 모두 인상하는 방안은 캐나다의 개혁 사례와 유사
  - 캐나다는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세 환급 제도(WITB; Working Income Tax Benefit) 확대, 소득공제 확대 등의 정책을 동시 추진

참고: 캐나다 노후소득보장 제도

캐나다의 노후소득보장은 정부가 지원하는 수당 성격의 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

- 정부가 지원하는 수당 성격의 연금은 기초연금(OAS; Old Age Security), 최저소득보장(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으로, 거주기간 10년 충족 시 일정 소득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연금제도
- 국민연금(CPP)은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사회보험 성격의 연금제도
- 개인연금은 개인의 자발적 저축(세금 감면)인 개인연금저축(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과 고용주가 제공하는 퇴직연금(RPPs; Registered Pension Plans)으로 구분

캐나다 노후소득보장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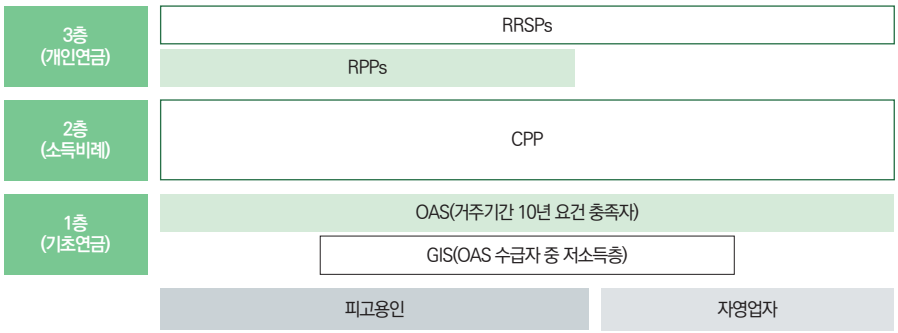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슈& 동향분석 제47호(2018.3.21.)

캐다나 공적연금 제도 개요

유형		가입자	수급자	수급요건	연금수준
정부지원 연금	기초연금 (OAS)	-	65세 이상	거주기간 10년	월 최대 $601.45
	최저소득보장 (GIS)	-	65세 이상	OAS 수급자 중 저소득층에 추가 지급	월 $898.32 또는 월 $540.77
국민연금	CPP	18세 이상 70세 미만의 근로자와 자영자 CPP: 14.1백만명	65세 이상 (조기연금: 60세~, 연기연금: ~70세) CPP: 5.8백만명	보험료 납입 (최소 한번 이상) 9.9% → 11.9%	신규(65세) 평균 $664.41 최대 $1,154.58

주: 1. OAS, GIS 연금수준은 2019년 1월 기준
2. OAS는 40년 거주 시 최대금액 지급, 그 이하 거주 시 매 1년마다 1/40만큼 감액
3. OAS는 2017년 연간소득 $74,788 이상은 초과금액의 15%를 상환, $121,314 이상은 전액 상환
4. GIS에서 월 $898.32는 독신(개인소득 $18,240 이하) 또는 비수급자 배우자 있는 경우(종합소득 $43,728 이하), 월 $540.77은 수급자 배우자(종합소득 $24,096 이하), 배우자수당 수급자인 배우자(종합소득 $43,728 이하)
5. CPP 연금액의 퇴직 직전 5년간 보험료 부과소득 평균의 25%(2019~2023년 33.3%로 상향)를 상한으로 지급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대체복무제도 관련 법률안 주요 내용 및 비용추계

1. 발의 배경 및 경과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관련 6건의 법안 발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복무제도 도입 관련 6건의 의원 법률안 발의

-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8.6.28.)을 하였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입법 및 제도 시행 요구
-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관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1건 등 6건의 의원 법률안 발의

2. 법률안의 주요내용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관련 법안의 발의에 따라 판정기구의 구성, 복무분야, 복무기간, 복무형태 등이 주요 쟁점 사항

쟁점 사항
- 판정기구의 구성
- 복무분야
- 복무기간
- 복무형태

- 주요 쟁점은 ① 대체복무 신청에 대한 판정기구를 국방부·병무청 소속 vs. 행정안전부·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중 어디에 두는 지, ② 복무분야는 사회복지서비스와 재난 복구·구호 등의 업무 vs. 지뢰 제거와 전사자 유해 발굴 등의 업무 중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③ 복무기간은 27개월(현역 육군의 1.5배) vs. 36개월(현역 육군의 2배) 등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④ 복무형태는 합숙근무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출퇴근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장만수
추계세제분석관
(02-788-4667)

각 법안별 재정소요액은 복무기간에 따라 729억원에서 1,203억원까지 차이

대체복무제도 도입 관련 법률안의 주요 내용 및 재정소요 추계

법안명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판정기구의 구성	복무분야	복무기간	5년간 재정소요액 (연평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2018.8.10.)	국방부 소속의 대체복무사전심사위원회(재심사도 수행)	사회복지와 사회서비스 지원 업무	36개월	729억원 (145억원)
	이종명의원 (2018.8.14.)	병무청 소속의 대체복무심사위원회(재심사도 수행)	지뢰의 제거 업무와 전사자 유해 등의 조사·발굴 업무 및 사회서비스 업무	36개월	729억원 (145억원)
	이용주의원 (2018.8.17.)	병무청 소속의 대체복무심사위원회·대체복무재심사위원회	사회복지 관련 업무와 소방·의료·재난·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	36개월	744억원 (148억원)
	김종대의원 (2018.11.19.)	행정안전부 소속 중앙대체복무위원회 및 각 도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	사회복지 관련 업무와 소방·의료·재난·구호 등의 공익 관련 업무	27개월	757억원 (151억원)
	김진태의원 (2018.12.21.)	병무청 소속 대체복무심사위원회	지뢰의 제거 업무와 전사자 유해 등의 조사·발굴 업무, 사회서비스 지원 업무	60개월	1,203억원 (240억원)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김학용의원 (2018.8.20.)	병무청 소속 대체복무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소속 대체복무재심위원회	지뢰 제거 업무와 공익 목적의 복구·구호 등 사업 지원 업무	44개월	813억원 (162억원)

주: 2018년 8월 발의된 4개 법안(김중로·이종명·이용주·김학용의원안)은 추계기간 동안 대체복무요원이 매년 540명으로 일정하게 신규 발생한다고 가정하였고, 2018년 11월 이후 발의된 김종대의원안과 김진태의원안의 경우 대체복무제도 시행 첫 해에만 대체복무요원을 1,080명 배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540명으로 일정하다고 가정하여 재정소요액을 추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비용추계 및 향후 과제

각 법안별 재정소요액은 크게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따라 729억원에서 1,203억원까지 차이

- 이종명의원안(2018.8.14)은 복무기간이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서 729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되고, 김진태의원안(2018.12.21.)은 복무기간이 5년(60개월)으로 1,203억원의 재정소요가 예상

국방부는 대체복무요원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하는 안을 입법예고하고 2019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예정

- 국방부는 현역병(육군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2018.12.28.)
- 국회 심사과정에서 복무분야, 복무기간 등에 대하여 징벌적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입영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36개월 이상 복무해야 한다는 의견, 지뢰제거 등 난이도가 있는 비전투분야 업무에 종사해야 한다는 의견 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 필요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한눈에 보는 조세지표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2007년 19.6%에서 2010년 17.9%로 낮아졌다가 2017년 20.0%로 증가

조세부담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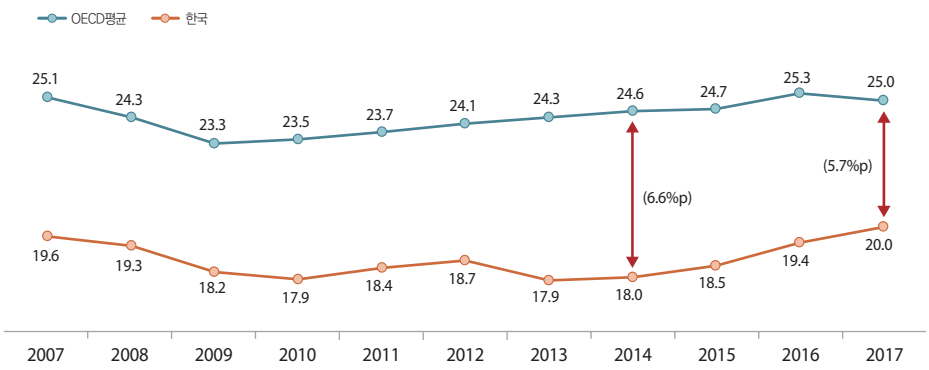

주: 1. 호주, 일본은 2017년 자료 미발표로 2016년 값을 적용
2. 조세부담률은 조세수입의 명목GDP 대비 비율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9.2.;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2007년 24.8%에서 2010년 23.4%로 낮아졌다가 2017년 현재 26.9%로 증가

국민부담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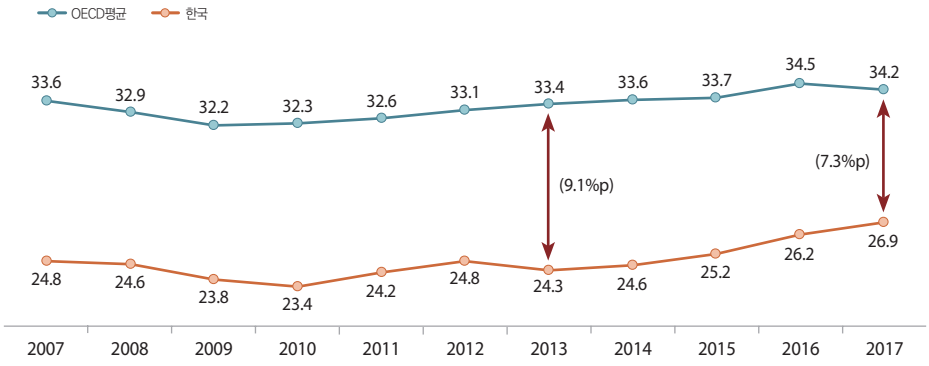

주: 1. 호주, 일본은 2017년 자료 미발표로 2016년 값을 적용
2.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의 합임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9.2.;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각 연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김효경

추계세제분석관
(02-788-4838)

주요 세목별 세율

(단위: %)

[소득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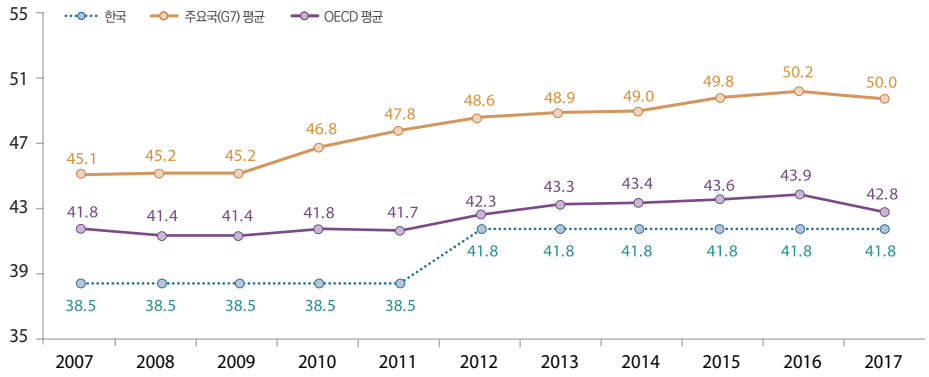

[법인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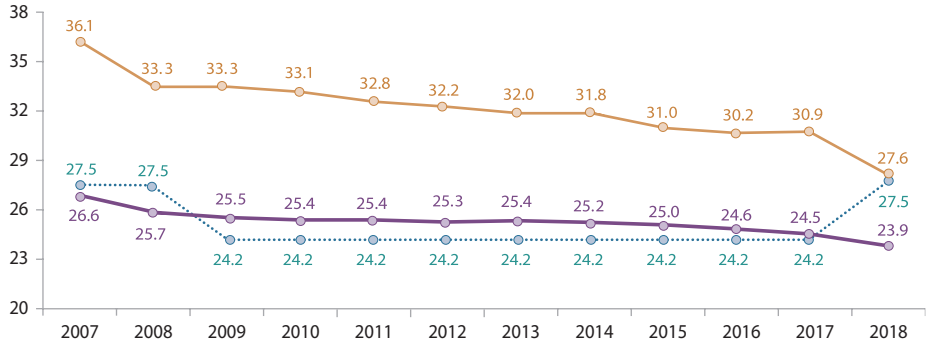

[부가가치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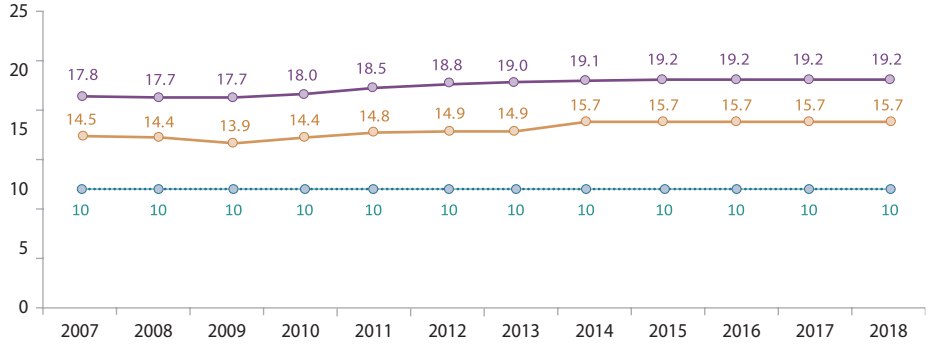

주 : 1. 소득세와 법인세는 최고세율(지방세 등 포함), 부가가치세는 표준세율 기준이며 주요국 중 미국(판매세)은 제외
2. 소득세율은 현재 OECD에서 2017년까지 발표하고 있음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2019.2.

2007년 이후
OECD 주요국은
부가가치세율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을 중심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추세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GDP 대비
세수 비중은 OECD
국가 대비 소득세와
소비세 비중이 낮고
법인세와 재산세
비중이 높은 구조

2017년 기준 명목GDP 대비 세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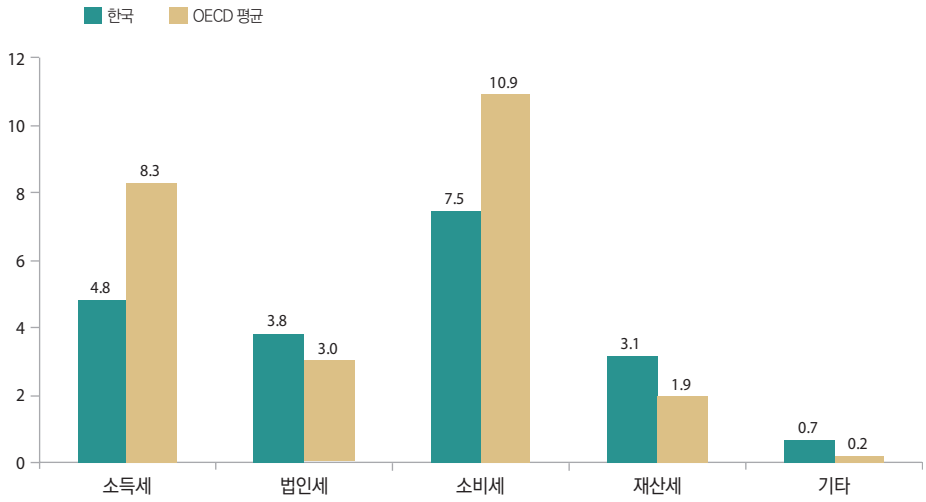

주: 호주, 그리스 등은 2017년 자료 미발표로 2016년 값 적용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9.2.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은
2007년 21.2%에서
2017년 23.3%로
2.1%p 증가

총 조세 대비 지방세 비중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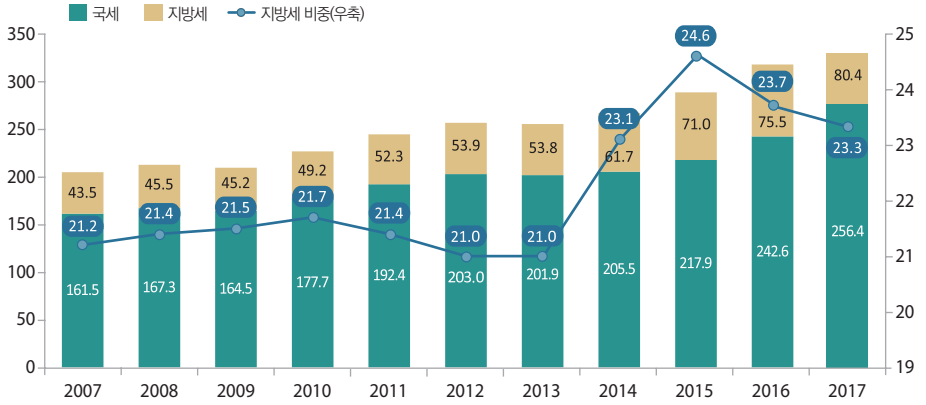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 관세청, e-나라지표:징수보고서, 2018.3.;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국세 및 지방세 감면액 및 감면율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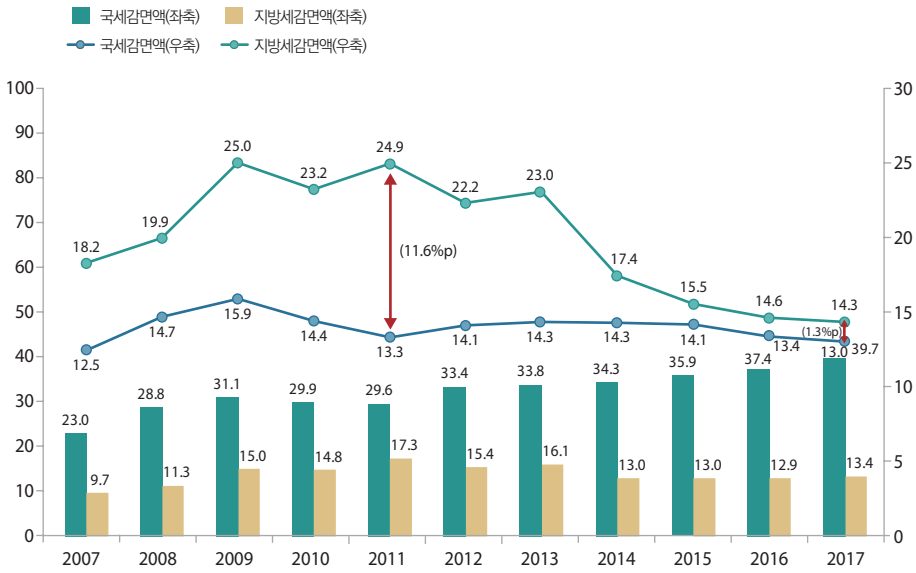

주 :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국세수입액 + 국세감면액), 지방세감면율=지방세감면액/(지방세수입액 + 지방세감면액)
자료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2017년 국세감면율은 13.0% 지방세감면율은 14.3% 수준이며, 지방세 감면율과 국세감면율 간 차이는 2011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

월별 국세수입액 및 진도율

(단위: 조원,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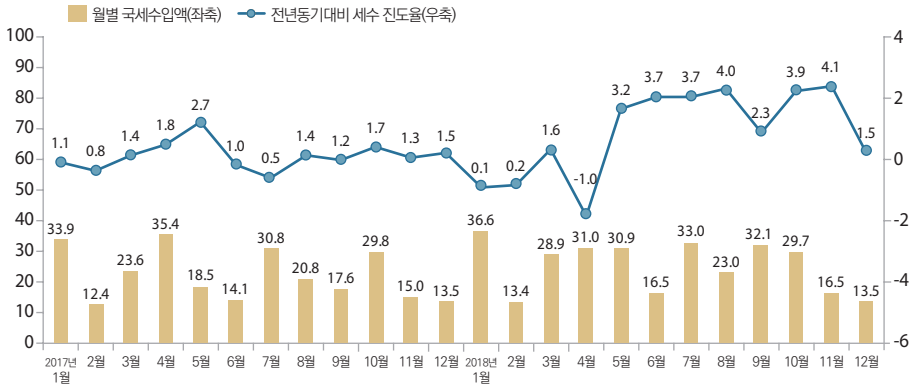

자료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19.2.

2018년 12월 세수는 13.5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세수 진도율은 1.5%p

nabo Cost Estimates & Tax Issues
추계&세제 이슈

발간일	2019년 2월 25일
발행인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인쇄처	명문인쇄공사(02-2079-9200)

발간등록번호 31-9700489-001575-08
© 국회예산정책처, 2019

건전한 재정
희망한 미래

nabo Cost Estimates & Tax Issues

추계&세제 이슈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89-001575-08